

19세기 濟州地方의 土地賣買 實態

- 涯月邑 郭支里 土地文書를 중심으로 -

高 昌 錫*

〈차 례〉

- I. 머리말
- II. 土地賣買文書 - 明文·不忘記·可據(考)文
- III. 分財記 - 葉作記·衿記·衿付文書·都許文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최근 北濟州郡 公報室로부터 解題를 의뢰 받았던 古文書 중, 토지매매 문서와 分財記에 해당하는 것들을 따로 한 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고문서의 소재지는 涯月邑 郭支里라고 하였으나 소장자의 世系 등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확인할 길이 없다. 이미 이들 문서는 소장자의 손을 떠나 제삼자가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문서의 내용으로 보아 金氏 집안에 소장되었던 金氏家門과 관련된 문서인 것만은 분명하다.

· 왜냐하면 일련의 문서 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문건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金世完의 教旨로, 咸豐 9년(철종 10, 1859)에 나이 90세가 되었으므로 定式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에 의하여 通政大夫에 加資한다¹⁾는 내용이다. 즉, 老職²⁾에 해당하는 품계이며, 또 이에 근거하면 김세완은 영조 46년(1770) 庚寅生이다. 그리고 그의 나이 32세 때인 순조 원년(1801)에 처음으로 토지의 買受가 이루어지는 등 총 10건의 買受文記가 있다. 또 하나는 金光寶(普)에게 고종 4년(1867, 丁卯) 10월에 後部千摠³⁾으로, 光武 6년(1902, 壬寅) 4월에 鄕校訓長⁴⁾으로 임명하는 傳令과 帖紙가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고문서는 총 94건이며, 그 대부분이 토지매매와 관련된 것들이다. 즉, 매매문서는 대부분 明文(79건)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개중에는 不忘記(7건), 可據(考)文(2건) 등으로 표기된 것도 있다. 분재기는 葉作記(2건), 衿記(2건), 衿付文記(1건), 都許文(1건)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朝鮮朝 純祖代로부터 그 이후 즉, 19세기의 문서들이다. 따라서 이들 문서는 이 시대에 광지리에 거주하던 金氏 집안의 生活史를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94건의 고문서를 매매문서와 분재기로 나누어서 연대순으로 정리한 다음, 먼저 자료 하나 하나에 간략히 해제를 붙이고, 다음으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고문서는 正書를 하면서 필자 나름대로 띄어쓰기를 하였다. 내용 중 [] 안은 誤字를 바로잡은 것이고, () 안은 누락된 글자를 보충한 것이다.

II 土地賣買文書

1. 明文으로 표기된 賣買文書

(01) 嘉慶陸年 辛酉 九月初四日 金世完處明文(40cm×32.5cm)

- 1) 教旨 金世完爲通政大夫者 咸豐九年二月 日 年九十依定式加資(官印 1곳 날인).
- 2) 老職은 80세, 90세, 100세에 이른 노인들에게 주는 老人職이다. 敬老禮遇의 뜻으로 주었는데, 실직은 아니었다.
- 3) 傳令 把摠金光寶 後部千摠差定 不輕隨行者 丁卯十月 日 大將(押, 官印 1곳 날인).
- 4) 兼牧使爲差定事 鄕校訓長差定 不輕察任向事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右帖下幼學金光普 準此 光武六年四月 日 帖印(使 印, 官印 3곳 날인). 이에 앞서 同年 2월에 別監으로 임명하는 金性浩의 첩지도 있다. 兼牧使爲差定事 別監差定 不輕察任向事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右帖下幼學金性浩 準此 光武六年二月 日 帖印(使 押, 官印 3곳 날인)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文永上處 祖(上)流來田 地趣同山員 參庫合 粟種一斗六升
付只田庫 四標段 東洪進文 西張寒中 南金貴連 北金成萬田 四標分明爲遺 田庫價本
段 正木壹疋 準計捧上後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壹[日]後子孫中 雜談持[之]弊是
去等 持此文記告官邊[下]正事

田主 文永上(手決)

筆執 李東彩(手決)

이 明文은 순조 원년(1801) 9월 초4일에 田主人 文永上이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 즉 요긴하게 사용할 데가 있어서 祖上流來田인 地趣同山員⁵⁾
의 세 곳 합계 粟種[좁씨] 1말 6되 부치기⁶⁾를 正木⁷⁾ 1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
다는 내용이다.

(02) 嘉慶拾陸年 九月二十一日 金世完處明文(38.5cm×37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賣得 可亦所岳員 皮牟四斗付只 四標段 東玄戒宗田 西
買者田 南金貴星田 北金貴得田 四標分明爲在 田庫價本段 正木一疋二十尺 準計捧
上後 同世完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
事

田主 李召使[史](右手)

筆執 姜昌甲(手決)

이 明文은 순조 11년(1811) 9월 21일에 田主人 李召使⁸⁾가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이 買得한 可亦所岳員의 皮牟[겉보리] 4말 부치기를 正
木 1필 20척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03) 嘉慶拾玖年 甲戌 七月二十日 金世完處明文(42.5cm×37cm)

5) 地趣同山員은 밭이 있는 지경의 지명이며, 員은 들, 즉 평야를 의미한다.
6) '부치기[付只]'는 논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얼마의 씨를 뿌릴 만한 넓이이다. 이
와 같은 용어로는 '지기[落只]'가 있는데, 제주 지방에서는 밭인 경우 지기보다는 부치
기, 논인 경우 '판이[片]'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7) 正木은 품질이 좋은 무명을 말한다.
8) 李召史의 召史[조이]는 吏讀語로, 姓 밑에 붙여서 과부임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召史도
같다.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祖上流來田 累乙于始員 皮牟柒斗付只田庫 肆標段 東金貴得 金貴成田 西南金(공란)田 北大路·金令完田·姜才太山坐田 肆標分明爲去乎 價本段 正木貳疋三十五尺 準計捧上後 金世完處 永永放賣爲在 日後子孫之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張漢宗(手決)

筆執 李光億(手決)

이 明文은 순조 14년(1814) 7월 20일에 田主人 張漢宗이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祖上流來田인 累乙于始員의 皮牟 7말 부치기를 正木 2필 35척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04) 嘉慶十九(年) 甲戌 十二月十八日 金世完處明文(41cm×33.5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械[計]無路乙仍于 自己買得 久付石員 皮牟八斗付只 四標段 東秦時永田 西金貴得田 南高丁順田 北金永完等田 四標分明爲在田庫 價本段 正木四疋 準計捧上後 同世完處 永永放賣爲遣 本文記并 永永許給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指[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金貴成(左手寸)

筆執 金昌甲(手決)

이 明文은 순조 14년(1814) 12월 18일에 田主人 金貴成이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자신이 산 久付石員의 皮牟 8말 부치기를 正木 4필을 받고 本文記⁹⁾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05) 道光元年 辛巳 十月初捌日 金世完處明文(31cm×3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矣買得田 介南田 知促同山員 粟參升付只田庫 肆標段 東賣者田 西安哥田 南名不知文哥田 北買者田 肆標分明爲在 價本段 正木壹疋貳拾尺 準計捧上後 同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他田庫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

9) 本文記는 舊文記라고도 하며 이전 매매 때에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이에 비해 새로 매매가 이루어져서 작성된 문서를 新文記라 하였으며,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신문기와 함께 본문기도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사유가 있어서 넘겨주지 못할 때에는 문서의 말미에 넘겨주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金取成(手決)

筆執 金慶瑞(手決)

이 明文은 순조 21년(1821) 10월 초8일에 田主人 金取成이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내가 산 知促同山員의 介南田 粟 3되 부치기를 正木 1필 20척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本文記는 다른 밭이 동일 문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06) 道光貳年 壬午 十月拾伍日 金世完處明文(40.5cm×33.5cm)

右明文事段 當此今年 時運不幸 早失喪妻 護喪等喪債 出處無路故 妻邊衿得流田 貴夫以貝 皮牟柒斗付只田庫 四標段 東金取星 西金貴得 南金仁福 北張泰奉田 四標 各各分明爲在 田庫價本段 正木柒疋 準計捧上後 同世完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同生子孫良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李仁福(手決)

訂人 孫得(手決)

筆執 姜慶瑞(手決)

이 明文은 순조 22년(1822) 10월 15일에 田主人 李仁福이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금년에 이르러 時運이 불행하여 일찍 喪妻를 하였는데, 그 護喪 등에 들어간 喪債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妻家에서 妻 몫으로 받은 流來田¹⁰⁾인 貴夫以貝의 皮牟 7말 부치기를 正木 7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07) 道光三年 癸未 九月二日 姜時黃處明文(39cm×31.5cm)

右右右明文事段 切有用處故 金進碩處買得田 皮牟拾貳斗落只 田庫四標段 東金召史田 西宋大元田 南宋大好田 北宋應祚田 各四標分明爲遺 田庫價本段 正木玖疋價 農牛一首 同人處 準計捧上後 田庫 同時黃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明文告官下呈[正]事

田主 姜時化(手決)

10) 流來田은 곧 祖上流來田을 말하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갈아먹던 밭이다.

筆執 文泰翼(手決)

이 明文은 순조 23년(1823) 9월 2일에 田主人 姜時化가 姜時黃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간절히 사용할 곳이 있어서 金進碩에게 산 皮牟 12 마지기를 正木 9필 값으로 農牛 한 마리를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08) 道光八年 戊子 正月十六日 金世完處明文(44cm×42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祖上流來田 於膺員 二庫合 皮牟七斗付只 四標段 東李太福田 西姜仲訓田 南張祿信田 北秦永秀田 田庫四標分明爲去乎 正木拾玖疋 準計捧上後 若有同生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文 松(手決)

筆執 姜明祐(手決)

이 明文은 순조 28년(1828) 정월 16일에 田主人 文松이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祖上流來田인 於膺員의 2필지 합계 皮牟 7말 부치기를 正木 19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09) 道光玖年 己丑 三月十三日 金明祿處明文(45cm×35.5cm)

右明文事段 祖上流來田 午前員 粟種柒升付只 四標段 東名不知金 西高京祿田 南佐千斤田 北孫厚贊田 四標分明爲去乎 價本段 白木貳十柒疋 準計捧上後 日後有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朴秀祿(手決)

筆執 金明祐(手決)

이 明文은 순조 29년(1829) 3월 13일에 田主人 朴秀祿이 金明祿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祖上流來田인 午前員의 粟種 7되 부치기를 白木¹¹⁾ 27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0) 道光拾參年 癸巳 二月貳拾參日 金明采處明文(41.5cm×30cm)

右明文事段 矣父母衿給田 大變同山員 皮牟柒斗付只 四標段 東金應淑田 西大路

11) 白木은 품질이 좋은 무명을 말한다. 木棉布라고도 하였다.

南尹成泰田 北張文采田 四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正木拾貳疋 準計捧上後 同人處
永永放賣爲乎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若有日後子孫中 雜談相爭
之弊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宋鎮明(手決)

筆執 任致宅(手決)

이 明文은 순조 33년(1833) 2월 23일에 田主人 宋鎮明이 金明采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父母님의 衿給田인 大變同山員의 皮牟 7말 부치기를 正木 12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都許文¹²⁾에 다른 밭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
는 내용이다.

(11) 道光十三年 癸巳 九月十五日 金世完處明文(30.5cm×33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妻便衿給田 加代員南邊 粟種肆升付只 四標段 東姜張良田
西名不知梁掌議田 南金才旭田 北妻便同生文哥田 四標分明是遺 價本段 正木伍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葉作記并爲[以] 永永爲放賣爲乎矣 妻同生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孫才仁(手決)

筆執 鄭宗信(手決)

이 明文은 순조 33년(1833) 9월 15일에 田主人 孫才仁이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妻便의 衿給田¹³⁾인 加代員 南邊의 粟種 4되 부치기를 正木 5
필을 받고 葉作記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葉作記는 문서번호 90
참조).

(12) 道光拾參年 癸巳 九月十五日 金明采處明文(41.5cm×30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妻祖上田 人主洞員 粟種四升付只田庫 四標段 東名不知姜
哥田 西名不知梁哥田 南孫才進田 北名不知金哥田 四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正木
伍疋 準計捧上後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并利[以] 放賣是遺 日後妻之同生

12) 都許文은 자녀들에게 分財한 내역을 하나의 문서에 적어 놓은 것을 말한다.

13) 衿給田[깃급전]은 吏讀式 표기의 하나로, 상속할 재산의 몫[衿, 깃]을 주는 것[衿付]이
며, 반대로 받는 것을 衿得[깃득]이라 하였다.

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文成旭(手決)

筆執 金老云(手決)

이 明文은 순조 33년(1833) 9월 15일에 田主人 文成旭이 金明采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妻家の 祖上田¹⁴⁾인 人主洞員의 粟種 4되 부치기를 正木 5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3) 道光拾肆年 甲午 二月十一日 金明采處明文(40.5cm×36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祖上流來田 無路員 皮牟捌斗付只 四標段 東金義哲田 西金萬興田 南崔宗信田 北李明采田 四標分明是遺 價本段 正木拾陸疋 右人處 準計捧上後 洞[同]明采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諸[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同生子孫族屬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金先道(手決)

筆執 金應云(手決)

이 明文은 순조 34년(1834) 2월 11일에 田主人 金先道가 金明采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祖上流來田인 無路員의 皮牟 8말 부치기를 正木 16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함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4) 道光拾肆年 甲午 二月十三日 金世完處明文(42cm×4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月羅花員 皮牟陸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小路 西具世民 南秦哥田 北高用漢田 標分明爲遺 價本段 正木柒疋 準計捧上後 本文記(并以)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自筆執 金明祐(手決)

이 明文은 순조 34년(1834) 2월 13일에 田主人 金明祐가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月羅花員의 皮牟 6말 부치기를 正木 7필을 받고 영원히 팔

14) 祖上田은 祖上流來田과 같다.

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5) 道光十七年 丁酉 正月二十八日 金世完處明文(41.5cm×32.5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故 祖上流來田 紅石員 粟五刀付只 肆標段 東名不知高哥田 西李恒三田 南李恒三田 北小路 肆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正木肆疋二十尺 準計捧相[上]後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金景祿(手決)

筆執 金學俊(手決)

이 明文은 현종 3년(1837) 정월 28일에 田主人 金景祿이 金世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흉년을 당하였으므로 祖上流來田인 紅石員의 粟 5刀¹⁵⁾ 부치기를 正木 4필 20척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刀는 升과 같다).

(16) 道光拾柒年 丁酉 五月二十三日 別接中 金光元·洪光允處明文(43cm×35cm)

右明文事段 矣弟致明娶妻時 元無一尺布故 勢不得已 父母自起買得田 靑同磊員 皮牟參斗付只 四標段 東金丁孝田 西李恒三田 南金世院田 北金允梯田 四標分明是在 田庫價本段 正木肆疋 準計捧上後 同接中處 本文并以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同生中 相爭之弊則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自筆執 任致宅(手決)

이 明文은 현종 3년(1837) 5월 23일에 田主人 任致宅이 자필로 金光元·洪光允 두 사람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동생 致明이 아내를 맞을 때, 원래 베 1척도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이 산 靑同磊員의 皮牟 3말 부치기를 正木 4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7) 道光十九年 己亥 十一月二十二日 姜召吏處明文(37.5cm×33.5cm)

右右明文事段 急有用處故 勢不得已 宋隱命處買得田 據木非來員 皮牟五斗付 四標段 東趙光無田 西南北小路 四標分明爲在 田庫價本段 正木五十尺價 皮穀四十

15) 刀는 되[升]의 차자 표기이다.

斗 準計捧上後 本文記段并爲[以] 同姜召吏處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宋萬億(喪人不着)

筆執 姜世漢(手決)

이 明文은 현종 5년(1839) 11월 22일에 田主人 宋萬億이 姜召吏¹⁶⁾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宋隱命에게 산 據木非來員의 皮牟 5말 부치기를 正木 50척 값으로 皮穀 40말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18) 道光二十年 庚子 三月十三日 文卜太·文榮寶·文丁象·文明得等處明文(37cm×32cm)

右明文事段 有用處故 矣祖上流來門路 郭支里內員 貳拾貳把貳尺 皮牟參升付 四標段 東小路 西金太京門路 北秦京訓田 南尹氏菜田 四標分明是在 價本段 正木壹正伍尺陸寸 準計捧上後 自洞中 右四人處 永爲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同生子孫族屬中 雜談之弊則 持此文記告官下正事

門路主 金京象(手決)

筆執 座主 金光用(手決)

이 明文은 현종 6년(1840) 3월 13일에 田主人 金京 이 文卜太·文榮寶·文丁象·文明得 등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祖上流來의 門路 [올레]인 郭支 里內員의 22把[밭] 2척의 皮牟 3되 부치기를 正木 1필 5尺 6寸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19) 道光二十三年 庚戌(癸卯의 착오) 五月二十三日 金致京處明文(36cm×32.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不得宋啓信處買得 寶用洞山員 皮牟壹斗付只田庫 價本段 白木四正二十尺 準計捧上後 同人處 各四標段 東文啓昌田 西姜世雄家者[坐]田 南文光烈家者[坐] 北買者田 四標分明爲在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并 日後 洞[同]生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16) 召吏는 注 4) 참조.

〈田主自〉筆執 文光宗(手決)

이 明文은 헌종 9년(1843) 5월 23일에 田主人 文光宗이 金致京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부득이 買得한 寶用洞山員의 皮牟 1되 부치기를 白木 4필 20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0) 道光貳拾參年 癸卯 十一月貳拾柒日 金百仁處明文(36cm×36.5cm)

右明民事段 要用所致 矣祖上流來田 中路員 皮牟貳斗參升付只 肆標段 東文丁保田 西小路 南名不知朴哥田 北小路 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正木拾參疋 準計捧上後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同右人處 永永放賣是遺 日後同生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告官下正事

田主 趙繼云 母(喪不着)

筆執 高世衍(手決)

이 明文은 헌종 9년(1843) 11월 27일에 田主人 趙繼云의 母가 金百仁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祖上流來田인 中路員의 皮牟 2말 3되 부치기를 正木 13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1) 道光貳拾陸年 丙午 四月初七日 金百仁處明文(34.5cm×32cm)

右明民事段 唯我接中 緊有用處 既已買得田 南旨同山員 皮牟參斗付只 四標段 東金丁孝田 西李恒順田 南佐光旭田 北金允希田是遺 田庫價本段 正木拾伍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接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接長 金光元(手決)

契接中 所任 金丁齊(手決)

筆執 金致健(手決)

이 明文은 헌종 12년(1846) 4월 초7일에 契接(契員)들이 金百仁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우리 동아리 내에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이미 買得한 南旨同山員의 皮牟 3말 부치기를 正木 15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2) 道光二十九年 己酉 正月三十日 金百仁處明文(36.5cm×33.5cm)

右明文事段 矣急有用處故 矣父衿得家基 郭支上洞 里內員 草家三間貳鞭 麻子貳斗付只 四標段 東買者與文丁緣門路 西南高永杓家基門路 北金泰景門路 標分明是遺價本段 白木伍拾捌疋 準計捧上後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是遺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同生子孫中 若有起鬮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家基主 文用得(手決)

訂人 文明祿(手決)

筆執 高漢明(手決)

이 明文은 현종 15년(1849) 정월 30일에 家基主人 文用得이 金百仁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아버지가 유산의 몫으로 받은 집터인 郭支上洞 里內員의 草家 3칸 두 채¹⁷⁾와 麻子[삼씨] 2말 부치기를 白木 58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3) 道光貳拾玖年 己酉 二月十五日 朴仁好處明文(39cm×33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矣祖上流來田 大去利員 家基田 麻子壹斗參升付只田庫 四標段 東金連明田 西小路 南金應世家 北朴京連田 四標分明是遺 價本段 白木拾參疋 準計捧上後 本文記段 都許中在錄故 不得許給是遺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同生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金應弘(手決)

筆執 金百仁(手決)

이 明文은 현종 15년(1849) 2월 15일에 田主人 金應弘이 朴仁好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祖上流來田인 大去利員의 家基田[집터왓] 麻子 1말 3되 부치기를 白木 13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4) 道光二十九年 己酉 八月十四日 任召史處明文(38.5cm×27.5cm)

17) '채'는 借字인 鞭의 譯語.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矣衿下田 郭支里內員 皮牟肆升付只田庫 四標段 東北賣者
家與門路 西小路 南金鐵寬家 標分明而價本段 正木拾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若有雜談之弊則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自筆 金景興(手決)

이 明文은 현종 15년(1849) 8월 14일에 田主人 金景興이 자필로 任召史에게 작
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衿下田¹⁸⁾인 郭支 里內員의 皮牟 4되 부치기를 正木
10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5) 道光三十年 庚戌 正月初十日 任召史處明文(30cm×32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仲弟衿下 上洞里內大巷員 麻子柒升付 草家參間壹鞭 四
標段 東金太京田 西金召吏田 南朴奎奉田 北朴仁好家基 四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正木貳拾參疋貳拾尺 準計捧上後 同任召史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同
生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而告官下正事

家基主 長兄 高世宗(手決)

筆執 孫才祿(手決)

이 明文은 철종 원년(1850) 정월 초10일에 家基主人 長兄 高世宗이 任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仲弟에게 衿下한 上洞里內 大巷員의 麻子 7되 부
치기를 正木 23필 20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6) 咸豐元年 辛亥 正月二十二日 金伯仁處明文(37cm×34cm)

右明文事段 矣緊有用處故 勢不得已 自己買得田 爭旨乙員 皮牟伍斗付只 四標段
東申明守田 西小路 南朴守大田 北張國連田 標分明而價本段 正木參拾參疋 準計捧上
後 右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子孫中 雜談之弊 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安召吏(右手寸)

筆執 金應樂(喪不着)

이 明文은 철종 2년(1851) 정월 22일에 田主人 安召吏가 金伯仁에게 작성해 준

18) 衿下田은 衿給田과 같다. 注 9) 참조.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買得田인 爭旨乙員의 皮牟 5말 부치기를 正木 33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7) 咸豐元年 辛亥 十一月初十日 金萬興處明文(36cm×32cm)

右明事段矣 要用所致故 祖上流來田 海岸員 粟種參刀付只田庫 四標段 東西小路 南北申頭松田 四分明是遺田庫 價本段 正木九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自筆執 金光杓(手決)

이 明文은 철종 2년(1851) 11월 초10일에 田主人 金光杓가 자필로 金萬興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祖上流來田인 海岸員의 粟種 3되 부치기를 正木 9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8) 咸豐元年 辛亥十二月十六日 金致京處明文(18,5cm×26,5cm)

右明事段 要用所致 勢不得已 妻之祖上流來田 射長田員 皮牟參斗付只田庫 四標段 東西金上采田 南姜應明田 北金上老田 各四標分明爲在 田庫價本段 正木壹疋拾尺 準計捧上爲去乎 同致京處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 永爲放賣爲去乎 日後 同生中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父 金(手決) 田主 自筆執 金成祿(手決)

이 明文은 철종 2년(1851) 12월 16일에 田主人 金成祿이 金致京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하는 수 없이 妻家の 祖上流來田인 射長田員의 皮牟 3말 부치기를 正木 1필 10척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9) 咸豐三年 癸丑 四月十六日 金百仁處明文(40cm×32,5cm)

右明事段 要用所致 李明哲處買得田 季岳員 皮牟捌斗付 四標段 東金明友田 西孫太昌田 南李太云田 北秦成訓田 標分明是遺 價本段 正木拾貳疋 準計捧上後 同百仁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若有子孫中雜 談之弊則 此文記下呈[正]事

田主 文賢興(手決)
 郭支 印 筆執 金光用(手決) 永 字印
 證 農監 洪光允(手決)

이 明文은 철종 4년(1853) 4월 16일에 田主인 文賢興이 金百仁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李明哲에게 買得한 季岳員의 皮牟 8말 부치기를 正木 12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農監이 증인을 서고 있으며, 洞號標(4.5cm×7cm)와 永字方標(5.5cm×5.5cm)가 날인되어 있다.

(30) 咸豐四年 甲寅 正月十六日 金伯仁處明文(55.5cm×34.5cm)

右明文事段 矣家夫朴仁好 去己酉年分行商次 右人處 白木貳拾疋價出而出陸 經歲經年 生死難分故 極爲寒心之中 同伯仁呈訴捧題音 付于洞中 星火督捧則 無可奈何 郭支大巷員 麻子貳斗付 四標段 東崔明煥 西小路 南金應世家 北朴京連等田 標分明 而右項貳拾疋價 同金伯仁處 本文

記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若有日後同生子孫中 雜談之弊卽[則] 持此文記告官下正事
 (永字印) 田主 金召史(右手寸)
 訂人 家夫之弟 仁福(手決)
 其弟 仁彩(手決)
 農監 高(手決) 新嚴 印(4.5cm×7cm)
 筆執 金致弘(手決)

이 明文은 철종 5년(1854) 정월 16일에 田主인 金召史가 金伯仁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제 남편인 朴仁好가 지난 己酉年(헌종 15년, 1849)에 行商次¹⁹⁾ 右人에게 白木 20필을 빚을 내고[價出] 出陸하여 여러 해가 지났으나 生死를 분별하기가 어려워 극히 寒心하던 중에 同 金伯仁이 빚을 받기 위해 官에 訴狀을 제출하여 題音²⁰⁾을 받고 洞中에 교부하여 星火같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니, 어찌할

19) 行商次의 '商'은 곧 商으로, 예전의 문서에서는 거의 商으로 표기하였다. 行商(行商)은 裸負商 즉, 등짐장수와 붓짐장수가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20) 題音[제김]은 吏讀語로 題辭와 같으며, 관청에서 백성들이 제출한 訴狀 또는 陳情書 따위에 쓰는 관청의 판결이나 지령을 말한다.

수가 없어서 郭支 大巷員의 麻子 2말 부치기를 빌린 正木 20필 값으로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1) 咸豐四年 甲寅 二月二十三日 任召史處明文(20cm×27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自起買得田 郭支上洞里內大路員 皮牟六刀付只田庫 四標段 東金應圭田 西小路 南朴圭奉田 北金應世田 四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正木貳正 準計捧上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金召史(右掌手寸)

筆執 金鍾仁(手決)

이 明文은 철종 5년(1854) 2월 23일에 田主인 金召史가 任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의 買得田인 郭支上洞里內 大路員의 皮牟 6되 부치기를 正木 2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2) 咸豐六年 丙辰 正月二十八日 金光根處明文(34.5cm×34.5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 自起買得田 後沙田員 皮牟十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小路 西張萬宗田 南李光俊田 北趙仁福田 四標分明以遺 田庫價本段 正木卅七疋 俊[準] 計捧相[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政[正]事

田主 自筆執 張宗淑(手決)

이 明文은 철종 7년(1856) 정월 28일에 田主인 張宗淑이 金光根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의 買得田인 後沙田員의 皮牟 10말 부치기를 正木 27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문서번호 34 참조).

(33) 咸豐八年 戊午 十一月十四日 金應圭處明文(40.5cm×33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矣買得 郭支上同里內員 家基田 麻者[子]壹斗陸升付 三間壹鞭 及四標段 東金景興家基 西小路 南尹宗興家基 北任召吏家 四標分明是遺 家基價本段 白木貳拾陸疋參拾尺 準計捧上後 同人處 本文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訂(農)監 洪光允(手決)

家基主 自筆執 金日孫(手決)

이 明文은 철종 9년(1858) 11월 14일에 家基主인 金日孫이 金應圭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의 買得한 郭支上同 里內員의 家基田 麻子 1말 6되 부치기와 3칸 한 채를 白木 26필 30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4) 咸豐九年 己未 正月初二日 金百仁處明文(37cm×39.5cm)

右明文事段 矣(有)用處故 自起買得田 後砂田員 皮牟拾斗付 四庫合 四標段 東小路 西張仁申田 南李光俊田 北趙仁集田 四標分明而價本段 正木參拾柒疋 準計捧上後 本文記兩張并以 右人金百仁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子孫中 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金光根(手決)

筆執 金宗仁(手決)

이 明文은 철종 10년(1859) 정월 초2일에 田主인 金光根이 金百仁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사용할 곳이 있어서 자신의 買得한 後砂田員의 皮牟 10말 부치기를 正木 37필을 받고 본문기 2장과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5) 咸豐九年 己未 二月二十五日 尹重煥處明文(62.5cm×33cm)

右明文事段 緊有用處故 矣衿下家基 里內東洞員 麻子貳斗付 草家三間·五間貳鞭 門路并 四標段 東賣者田 西金萬吉門路 南小路 北金宗澤家 標分明而 又同員 皮牟壹斗付 四標段 東小路 西賣者門路 南李光俊家 北李興福家 標分明而兩田庫 價本段 正木柒拾疋 準計捧上後 同重煥處 永爲放賣是矣 本文段 都許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若有雜談則 持此文憑考事

郭支 印

家基主 金學俊(手決)

永 字印

筆執 金錫勳(手決)

訂 農監 洪光允(手決)

이 明文은 철종 10년(1859) 2월 25일에 家基主인 金學俊이 尹重煥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내 몫으로 준 집터인 里內 東洞員의 麻子 2말 부치기와 草家 3칸·5칸 두 채의 門路 및 같은 지경의 皮牟 1말 부치기를 아울러서 正木 70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6) 同治元年 壬戌 正月十六日 金知弘(탈락)(47.5cm×38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祖上流來田 介崇伊員 皮牟拾斗付只 四標段 東小路 西契中田 南李民孫田 北朴秀潤田 四標分明而價本段 正木伍拾壹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永爲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若有族屬中 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正事

郭支 印 田主 自筆執 金根玉(手決) 永 字印 永 字印
訂人 農監 張文煥(手決)

이 明文은 철종 13년(1862) 정월 16일에 田主인 金銀玉이 金知弘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祖上流來田인 漢崇伊員의 皮牟 10말 부치기를 正木 51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7) 同治二年 癸亥 二月十七日 金智弘處明文(46cm×3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矣衿下田 新岳員 皮牟伍斗伍刀付只 四標段 東金應奎田 西高永集田 南李興象田 北梁京弘田 四標分明而價本段 正木參拾貳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若有族屬中 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正事

郭支 印 田主 金應華(喪背着, 手決) 永 字印 永 字印
訂 農監 尹重煥(手決)
筆執 仲兄 應弘(喪背着, 手決은 뒷면)

이 明文은 철종 14년(1863) 2월 17일에 田主인 金應華가 金知弘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내 몫으로 준 新岳員의 皮牟 5말 5되 부치기를 正木 32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8) 同治三年 甲子 正月十八日 朴世得處明文(36cm×34.5cm)

右明文事段 緊有用處故 漢崇伊員 矣買得家基 及三間壹鞭 與皮车壹斗付只 四標段 東尹重還田 西尹重還門路 南金明得家基 北尹重還田 而四標分明是遺 家基價本段 正木貳拾伍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是矣 若有日後同生子孫中 雜談之弊則 持此文記告官下正事

家基主 金致鼎(手決)

筆執 金致建(手決)

이 明文은 고종 원년(1864) 정월 18일에 田主人 金致鼎이 朴世得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漢崇伊員의 내가 산 집터 밑 3칸 한 채와 皮车 1말 부치기를 正木 25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39) 同治三年 甲子 二月二十六日 金致京處明文(29cm×31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高尚朋處買得田 西洞里內員 皮车壹斗三升付 標東金明祿家坐田 南金明祿門路 西北小路 四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白木拾貳疋 準計捧上後 同致京處 本文記并爲[以]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自筆執 金性謙(手決)

이 明文은 고종 원년(1864) 2월 26일에 田主人 金性兼이 金致京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高尚朋에게 買得한 西洞 里內員의 皮车 1말 3되 부치기를 白木 12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0) 同治三年 甲子 四月二十五日 李景祿處明文(39.5cm×34.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起買得家基 大街員 麻子壹斗付只 草家三間壹鞭 二間壹鞭并以 四標 東孫才祿家 西南北小路 四標分明而價本段 白木貳拾肆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正事

家基主 趙仁集(手決)

筆執 金智弘(手決)

이 明文은 고종 원년(1864) 4월 25일에 家基主人 趙仁集이 李景祿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이 산 집터인 大街員의 麻子 1말 부치기와 草家 3칸 한 채 및 2칸 한 채를 아울러 白木 24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1) 同治三年 甲子 五月初十日 李興祚處明文(34.5cm×28.5cm)

右明文事段 急有用處故 買得田 小押介員 皮牟四斗付 標東北金汝宗田 西林所 南小路 四標分明而價本段 白木伍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同生子孫中 雜談之弊則 以此文記憑考事

田主 金明汝(手決)

筆執 尹宗興(手決)

이 明文은 고종 원년(1864) 5월 초10일에 田主人 金明汝가 李興祚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買得田인 小押介員의 皮牟 4말 부치기를 白木 5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2) 同治五年 丙寅 正月二十六日 具仁得處明文(27cm×35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涯無路故 勢不得已 祖上流來田 得藪鬱員 粟種柒升付只 四標 東秦大元田 西梁興福田 南玄有增田 北名不知秦生員田 四標分明而田庫 價本段 正木肆疋貳拾尺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則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秦永久(手決)

筆執 金廷興(手決)

이 明文은 고종 3년(1866) 정월 26일에 田主人 秦永久가 具仁得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祖上流來田인 得藪鬱員의 粟種 7되 부치기를 正木 4필 20척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문서 번호 52 참조).

(43) 同治五年 丙寅 四月拾八日 李漢祿處明文(31.5cm×32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不得不 買者父處買得田 造秀西洞 里內員 艸家參間壹鞭·
貳間壹鞭及基地 皮牟壹斗柒升付 標東小路 西文武烈田 南林用集家坐田 北宋京三家
坐門路 各標分明 此田價本段 白木拾伍疋半 依數捧上後 同漢祿處 本文記壹章并載
後 永爲放賣爲去乎 日後若或有子孫中 爭望者是去等 持此明文告官下正事

田主 洪寅烈(喪不着, 背面手決)

筆執 金履良(手決)

이 明文은 高宗 3년(1866) 4월 18일에 田主人 洪仁烈이 李漢祿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부득불 買者의 아버지에게 산 造秀西洞 里內員의 초가 3칸
과 2칸 각 한 채 및 집터인 皮牟 1말 7되 부치기를 白木 15필 반을 받고 본문기 1
장과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4) 同治六年 丁卯 三月二十八日 李恒祿處明文(36cm×42cm)

右右우明文事段 緊有用處故 買得家基 郭支上洞員 麻子貳斗付只 草家三間一鞭·
二間一鞭并以 四標段 東金京興家 西小路 南尹宗興家 北任召史家 四標分明而價本
段 白木貳拾陸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子孫中
雜談之弊卽[則] 持此文記告官下正事

家基主 金應圭(手決)

筆 金應弘(手決)

이 明文은 高宗 4년(1867) 3월 28일에 家基主人 金應圭가 李恒祿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買得한 집터인 郭支 上洞員의 麻子 2말
부치기와 草家 3칸 및 2칸 각 한 채를 합쳐 白木 26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
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문서번호 46 참조).

(45) 同治七年 戊辰 三月二十四日 金明直處明文(40cm×36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道無路故 買得家基 漢崇伊員 草家三間一鞭及基地 麻子
一斗付只 標東尹重遷田 西尹重遷門路 南金明得家 北尹重遷田 四標分明而家基 價
本段 白木拾參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若有日後同生
子孫中 雜談之弊則 持此文記告官下正事

家基主 朴世得(手決)

筆執 申日煥(手決)

이 明文은 고종 5년(1868) 3월 24일에 家基主인 朴世得이 金明直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흥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買得한 집터인 漢崇伊員의 草家 3칸 한 채 및 집터인 麻子 1말 부치기를 합쳐 白木 13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6) 同治七年 戊辰 六月初十日 金光普處明文(38cm×23.5cm)

右明文事段 緊有用處故 自起買得家 郭支上洞員家基 麻子壹斗伍升付 及草家三間一鞭·二間一鞭并以 標東金松家坐 西小路 南尹宗星 北任召吏家坐 四標分明 而此家基價本段 白木貳拾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子孫中 雜談之弊則 持此文記告官下正事

家基主 李恒祿(手決)

筆執 金明直(手決)

이 明文은 고종 5년(1868) 6월 초10일에 家基主인 李恒祿이 金光普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자신이 산 집인 郭支 上洞員의 집터 麻子 1말 5되 부치기와 草家 3칸과 2칸 각 한 채를 합쳐 白木 20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7) 同治八年 己巳 十一月十四日 金知洪處明文(37.5cm×29.5cm)

右明文事段 矣夫金明則以里任 還上補[逋]欠 柒拾餘石 而星火督捧之中 矣夫出陸逃亡則 迫不得已 任補[逋]還如于擔當次 買得家基 汗崇伊員 草家三間一鞭及基地 麻子一斗付 標東西北尹重還菜園及門路 南金明得家 四標分明而家基 價本段 白木參疋十尺準捧後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矣夫及族屬中 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正事

家基主 李召吏(右手寸)

訂 金明呂(手決)

筆 文啓云(手決)

이 明文은 고종 6년(1869) 11월 14일에 家基主人 李召史가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남편인 金明則이 里任으로 사사로이 소모한 還穀²¹⁾이 70여 섬이므로 星火 같이 깊도록 독촉하는 가운데, 남편이 出陸하여 도망해 버리니, 償還이 안된 환곡을 약간이나마 담당하기 위해 산 집터인 汗崇伊員의 草家 3칸 한 채와 집터인 麻子 1말 부치기를 白木 3필 10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48) 同治八年 己巳 十一月十七日 任召史處明文(34cm×28.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起買得家基 漢崇伊員 麻子壹斗付只 草家三間壹鞭并以四標 東西北尹宗還菜田及門路 南金明得家 四標分明而價本段 正木參疋參拾尺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正事

家基主 自筆 金知洪(手決)

이 明文은 고종 6년(1869) 11월 17일에 家基主人 金知洪이 任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이 산 집터인 漢崇伊員의 麻子 1말 부치기와 草家 3칸 한 채를 합쳐 正木 3필 30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059와 관련).

(49) 同治八年 己巳 十二月十七日 金知洪處明文(38.5cm×32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自起買得田 上洞里內員 麻子伍升付 肆標 東北金松家坐及門路 西小路 南買者之長子家坐 標分明是遺 價本段 正木壹疋 準計捧上後 右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則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任召史(右手寸)

筆執 金松(手決)

이 明文은 고종 6년(1869) 12월 17일에 田主人 任召史가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21) '사사로이 소모한 還穀'은 逋欠을 풀이한 것이다. 還穀은 관청 소유의 양곡을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대여하고 추수 뒤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회수하는 곡식을 말한다.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이 산 上洞 里內員의 麻子 5되 부치기를 正木 1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0) 同治八年 己巳 十二月廿四日 姜召(史)處明文(38cm×29.5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道無路故 勢不得只[己] 清水里內員 皮牟貳斗五升付 四標段 東大路 西李光五田 南李草松田 北李光集田 各標分明爲遣 價本段 穀十四斗準捧後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加奉[捧]穀八斗 又永永放賣爲遣 若有更言則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高興祿(手決)

筆執 姜弼雄(手決)

明文은 고종 6년(1869) 12월 24일에 田主人 高興祿이 姜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清水 里內員의 皮牟 2말 5되 부치기를 穀食 14말을 받은 뒤에 또 곡식 8말을 더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1) 同治八年 己巳 十二月二十五日 金知洪處明文(34cm×22.5cm)

右右明(文)事段 矣急有用處故 流來田 兵川田員 皮牟伍斗付 四標段 東北小路 西洪明官家坐 南朴春弘田 標分明而價本段 正木陸疋準捧後 右人處 永爲放賣是矣 本文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如所 日後 同生中雜談之弊則 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自筆 文丁喆(手決)

이 明文은 고종 6년(1869) 12월 25일에 田主人 文丁喆이 자필로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流來田인 兵川田員의 皮牟 5말 부치기를 正木 6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2) 同治玖年 庚午 正月二十日 金知洪處明文(38cm×22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道無路故 勢不得已 買得田 得藪乙員 粟柒升付只 四標段 東秦大元 西梁興福 南玄西徵 北秦哥田 四標分明而價本段 木參拾尺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後若有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高召史(右手寸)

筆執 朴宗信(手決)

이 明文은 고종 7년(1870) 정월 20일에 田主人 高召史가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買得田인 得載乙員의 粟 7되 부치기를 무명 30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3) 同治九年 庚午 正月二十五日 姜召史處明文(37cm×29cm)

右明文事段 當此荒年 生道未由故 在於當非內員 名不知居楮旨姜哥處買得田 二庫合 粟種三升付 四標 東小路 西高 日田 南玄哥田 北高永得田 各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白(木)參拾尺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永爲相換[換]文 以 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高明世(喪不着)

筆執 金大旭(手決)

이 明文은 고종 7년(1870) 정월 25일에 田主人 高明世가 姜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방법이 없으므로 當非內員에 있는 買得田 2필지 합계 粟種 3되 부치기를 白木 30척을 받고 相換文과 함께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4) 同治九年 庚午 三月初一日 姜召史處明文(35cm×28cm)

右明文事段 右人處 年前白木伍疋貸用是多[如]可 貳疋與授是遺 零[餘]木參疋 出處無路故 金戎將水員 矣父買得田 皮牟柒斗付 報給是矣 此田庫四標段 東西北小路 南姜必信田 四標分明而是田庫 價本段 前債參疋價 永永許給是矣 本文記段 都許中 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矣同生子孫中 相爭之弊則 是明文告官下呈[正]事

田主 李進成(手決)

筆執 儒弟 任元榮(手決)

이 明文은 고종 7년(1870) 3월 초1일에 田主人 李進成이 姜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年前에 白木 5필을 貸用하였다가 2필은 주고받았고 나머지 3필은 마련

할 길이 없으므로 金戎將水員에 있는 아버지의 買得田인 皮牟 7말 부치기를 前債 3필 값으로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5) 同治九年 庚午 八月十二日 高明元處明文(39.5cm×32.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流來田 造清員 皮牟拾柒斗付只 四標段 東契中田 西申斗松田 南任致明田 北金致煥田 四標分明而田庫 價本段 正木貳拾肆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相爭之弊則 持文記告官下正事

田主 自筆執 朴宗樂(手決)

이 明文은 고종 7년(1870) 8월 12일에 田主人 朴宗樂이 高明元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流來田인 造清員의 皮牟 17말 부치기를 正木 20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6) 同治十年 辛未 元月十八日 康召史處明文(30.5cm×30.5cm)

右明文事段 急有用處故 勢不得已 買得田 道木骨員 皮牟二庫合 伍斗付只 東南金明祿田 西賣者田 北契中田 標分明是遣 田庫價本段 白木參疋 準計捧上後 同康召史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他田並付故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李明哲(手決)

筆執 金啓磐(手決)

이 明文은 고종 8년(1871) 정월 18일에 田主人 李明哲이 康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하는 수 없이 買得田인 道木骨員의 2필 지 함께 皮牟 5말 부치기를 白木 3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말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57) 同治拾年 辛未 四月拾壹日 金知洪處明文(43.5cm×31.5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故 自起買得田 大巷員 皮牟壹斗付 標東南尹興孫家坐與門

路 西北小路 四標分明而價本段 正木柒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并以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李京祿(手決)

筆執 仲兄 李慶秀(手決)

이 明文은 고종 8년(1871) 4월 11일에 田主人 李景祿이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자신의 買得田인 大巷員의 皮牟 1말 부
치기를 正木 7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8) 同治拾年 辛未 四月拾壹日 金達才處明文(34.5cm×32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故 自起買得田 大巷員 皮牟壹斗付 標東崔明煥田 西尹召
史田 南朴宗順田 四標分明是遺 價本段 正木陸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任召史(右手中指寸)

筆執 李慶秀(手決)

이 明文은 고종 8년(1871) 4월 11일에 田主人 任召史가 金達才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자신의 買得田인 大巷員의 皮牟 1말 부
치기를 正木 6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59) 同治拾年 辛未 四月拾壹日 金達才處明文(41cm×30.5cm)

右明文事段 矣要用所致故 汗崇伊員 皮牟壹斗付 四標 東西北尹仲煥田 南金明得
家坐 四標分明是遺 價本段 正木伍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
去乎 日後子孫中 若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任召史(右手中指寸)

筆執 仲兄 李慶秀(手決)

이 明文은 고종 8년(1871) 4월 11일에 田主人 任召史가 金達才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汗崇伊員의 皮牟 1말 부치기를 正木 5
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문서번호 48 참조).

(60) 同治十年 辛未 五月十二日 白尙龍處明文(37cm×32.5cm)

右明文事段 父母喪所債不報故 不得已而衿得田 郭支上洞東洞員 皮牟壹斗付 四標東小路 西金宗凡田 南買者田 北小路門路 標西小路 分明而田庫 價本段 錢文貳拾捌兩準捧後 右人處 衿給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同生中 若有雜談之弊則持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孫召史(右手寸)

筆 佐士榮(手決)

이 明文은 고종 8년(1871) 5월 12일에 田主人 孫召史가 白尙龍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父母喪에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衿得田²²⁾인 郭支上洞 東洞員의 皮牟 1말 부치기를 錢文²³⁾ 28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1) 同治十年 辛未 流月廿七日 康召史處明文(39cm×31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自起買得 新造水里內 猪歌屹員 皮牟壹斗伍升付 表東西北中路 南金致京家坐田 各表分明而價本段 白木參正拾尺 準計捧上後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是遺 永永放賣爲去乎 日後文記憑考事

田主 玄啓恩(手決)

筆 金君瑞(手決)

이 明文은 고종 8년(1871) 6월 27일에 田主人 玄啓恩이 康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이 산 新造水里內의 猪歌屹員 皮牟 1말 5되 부치기를 白木 3필 10척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62) 同治十一年 壬申 一月十二日 金明隱處明文(22.5cm×34.5cm)

右明文事段 去五月分 白木一疋二十五尺代[貸]用後 報及出此[處]無路故 勢不得而 文勸己員 金召吏處買得田 粟種壹升付只是遺 田庫四標段 東金朱行田 西小路 南

22) 衿得田은 注 9) 참조.

23) 錢文은 화폐 즉, 常平通寶(葉錢)를 말한다. 화폐에 글자를 써넣었기 때문에 전문이라 한 것이다.

宋癸格田 北文光廻田 各四標分明 是田庫價本段 同明隱處 白木壹疋二十五尺 本文記並爲[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同生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李武兼(手決)

筆執 金癸磐(手決)

이 明文은 고종 9년(1872) 정월 12일에 田主人 李武兼이 金明隱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지난 5월에 白木 1필 25척을 貸用한 뒤 값을 길이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文勸己員의 金召吏에게 買得한 粟種 1되 부치기를 白木 1필 25척 값으로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3) 同治十一年 壬申 六月初六日 金光允處明文(35.5cm×28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買得家基 郭支上洞員 皮牟壹斗付 四標東北小路 西買者田 南賣者田 四標分明而價本段 錢文參拾陸兩準捧後 右人處 本文記并而[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是去等 以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白尙龍(手決)

筆執 高亨叔(手決)

이 明文은 고종 9년(1872) 6월 초6일에 田主人 白尙龍이 金光允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買得한 家基인 郭支 上洞員의 皮牟 1말 부치기를 錢文 36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4) 同治十一年 壬申 十一月初九日 姜召史處明文(27cm×39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文巾員 粟種壹升付只 李武兼處買得田 田庫四標段 東金時行田 西小路 南宋啓落田 北文光烈田 各四標分明而田庫 價本段 白木壹疋 錢參兩肆錢 準計捧上後 同姜召史處 本文並爲[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姓子孫中 若有更言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呈事

田主自筆 金大鎰(手決)

이 明文은 고종 9년(1872) 11월 초9일에 田主人 金大鎰이 姜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李武兼에게 산 文巾員의 粟種 1되 부치기를 白木 1필과 錢

文 3냥 4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5) 同治拾貳年 癸酉 七月十九日 金知洪處明文(36.5cm×34.5cm)

右明文字段 要用所致 自起買得田 上洞里內員 貳庫合 牟種參斗付只 標東小路 西朴宗順田 南買者田 北趙永學家 四標分明而田庫 價本段 白木參拾捌疋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族屬中 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 正事

田主 尹重煥(手決)

筆 金成鍾(手決)

이 明文은 고종 10년(1873) 7월 19일에 田主人 尹重煥이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이 산 上洞 里內員의 2필지 함께 牟種 3말 부치기를 白木 38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6) 光緒二年 二月初四日 左貴得處明文(26cm×28cm)

右明文字段 要用所致故 自得田 好田員 參合 皮牟陸斗付只田 標東小路 西趙永進田 南金鶴田 西金大旭田 各四分明田庫 價本段 錢七兩 準計奉[捧]上後 本文記並爲 [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下 正事

(田主 부분 탈락됨)

이 明文은 고종 13년(1876) 2월 초4일에 田主(탈락)가 左貴得에게 작성해 준 문서이다. 要用所致로 자신이 산 好田員의 3필지 함께 皮牟 6말 부치기를 錢文 7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7) 光緒參年 丁丑 十一月二十三日 金知洪處明文(40cm×24.5cm)

右明文字段 緊有用處故 矣父買得田 小押介員 皮牟參斗付 四標段 東金哥田 西金明汝田 南小路 北張萬松田 四標分明而價本段 白木貳疋半準捧 同知洪處 永爲放賣是矣 限拾年以 本木準數報給 而此田還退之意 如是成明文爲去乎 若過限未退則 永爲執耕事

田主 李日孫(手決)

筆 金成鍾(手決)

이 明文은 고종 14년(1877) 11월 23일에 田主人 李日孫이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아버지가 산 小押介員의 皮牟 3말 부치기를 白木 2필 받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本價[무명]의 소정 수량을 갚아 주고 이 받을 도로 물릴 뜻으로 이와 같이 明文을 작성하며, 만일 기한이 지나도 물리지 아니하면 영원히 소유하여 경작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서를 還退 혹은 權賣文記라 한다.

(68) 光緒四年 戊寅 二月二十六日 金知洪處明文(43.5cm×28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買得田 新岳員 皮牟拾柒斗付 四標段 東梁日百田 西申斗松田 南任致明田 北金致完田 四標分明而價本段 正木壹百參疋 準計捧上後 同金知洪處 本記并以 永爲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自筆 高明元(手決)

이 明文은 고종 15년(1878) 2월 26일에 田主人 高明元이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買得田인 新岳員의 皮牟 17말 부치기를 正木 103필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69) 光緒十年 甲申 二月初四日 金知洪處明文(29cm×40.5cm)

右明文事段 矣得病無愈之中 急有用處 自起買得田 城路長者田員 皮牟參斗付 東姜希文田 西高哥田 南梁達好田 北小路 四標分明 而田庫價本段 錢文肆拾陸兩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而[以] 永爲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正事

田主 高氏(右手寸)
筆執 尹宗興(手決)

이 明文은 고종 21년(1884) 2월 초4일에 田主人 高氏가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병을 얻어 療유가 없는 가운데 긴급히 사용할 곳이 있어서 자신이 산 城路長者田員의 皮牟 3말 부치기를 錢文 46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0) 光緒十年 甲申 二月初五日 金光普處明文(41.5cm×26.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買得田 新岳員 皮牟拾捌斗付 標東大岳 西尹生芑田 南秦日徵田 北李元吉田 標分明而田庫 價本段 錢文陸拾貳兩 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而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雜談之弊則 以此文記告官下呈[正]事

田主 金明汝(手決)

筆執 金松(手決)

이 明文은 고종 21년(1884) 2월 초5일에 田主人 金明汝가 金光普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買得田인 新岳員의 皮牟 18말 부치기를 錢文 62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1) 光緒十年 甲申 三月初一日 金性浩處明文(32.5cm×35.5cm)

右明文事段 矣繼家未分田 海巖味員 粟三升付 標東西小路 南北申哥田 四標分明是在 此田卽三女處區處田也 而木九疋價以 本文記授受 還賣於翁孀間云云則 此必爲未分也 到今山債條 出處無路故 錢文貳拾陸兩 準數捧之後 同右人處 本文并而[以] 永爲放賣爲去乎 後若有族屬中 雜談之弊則 以此文記憑考事

田主 金辛吉(手決)

訂人 三女孀 文聖孝

筆 長外孫 朴元奎(手決)

이 明文은 고종 21년(1873) 3월 초1일에 田主人 金辛吉이 金性浩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繼家의 未分田인 海巖味員의 粟 3되 부치기는 3女에게 처분했던 밭인데, 무명 9필 값으로 本文記를 주고받아 도로 翁孀 사이에 팔았다고 하니, 이는 분명히 未分田²⁴⁾이다. 지금까지 山債條를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錢文 26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2) 光緒十五年 己丑 十月初二日 文啓能處明文(22cm×31.5cm)

右明文事段 累年病席 生道無由故 流來家基 皮牟一斗付 四標段 東金致行田 西朴成友田 南朴元奎家坐 北金召吏門路 半分鍊子磨爲劃基地 價本段 錢文貳拾伍兩準捧

24) 未分田은 부모가 소유한 田地 중 부모 생시에 자녀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한 전지를 말한다.

後 同啓能處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并付故 不得許給爲去乎 後若族屬中 雜談之弊則 此文記憑考事

田主 金召史(右手寸)

筆 金宗洙(手決)

이 明文은 고종 26년(1889) 10월 초2일에 田主인 金召史가 文啓能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여러 해 病席에 있어서 살아나갈 방도가 없으므로 조상 대대로 전해 오는 집터인 皮車 1말 부치기를 錢文 25냥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73) 光緒十五年 己丑 十一月十一日 金光寶處明文(31.5cm×24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起買得 上洞里內 家基內外門路並 麻子壹斗貳升付 四標(東)金致京田 西朴官田 南朴元友家基 北金召吏家 四標分明而家基 價本段 錢參拾兩準捧後 若有日後雜談弊則 此文記憑考事

田主 自筆 文啓云(手決)

이 明文은 고종 26년(1889) 11월 11일에 田主인 文啓云이 金光寶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이 산 上洞里 내의 집터 안팎과 門路를 합쳐 麻子 1말 2되 부치기를 錢文 30냥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4) 大朝鮮 開國建陽二年[光武元年] 丁酉 四月初四日 金性浩處明文(38cm×28.5cm)

右明文事段 要用所致故 矣買得田 赤右員 粟種參升付只田庫 肆標段 東本田主玄日杓田 西朴哥田 南玄世賢田 北玄卯出田 肆標分明是遺 田庫價本段 錢文貳拾貳兩準計捧上後 同右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更言之弊則 持此文記憑考施行事

田主 自筆 李景龍(手決)

이 明文은 光武 원년(1897) 4월 초4일에 田主인 李景龍이 金性浩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자신이 산 赤右員의 粟種 3되 부치기를 錢文 22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建陽 2년은 없으므로 丁酉年은 光武 원년이다.

(75) 建陽二年 丁酉 五月十八日 金知洪處明文(33.5cm×26.5cm)

右明民事段 急有用處故 祖上流來田 季岳員 皮牟柒斗付只 四標 東金達松田 西秦仲花田 南買者田 北宋才文田 四標分明 價本段 錢文參拾伍兩捧上後 永永放賣是矣 本文記段 都許中在錄故 不得許給爲去乎 後若有雜談之弊則 持此文記憑考事

田主 李元吉(手決)

筆 李時鍊(手決)

이 明文은 光武 원년(1897) 5월 18일에 田主人 李元吉이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祖上流來田인 季岳員의 皮牟 7말 부치기를 錢文 35냥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76) 光武九年 甲辰 正月二十九日 金鍾林處明文(33.5cm×29.5cm)

右明民事段 要用所致故 流來田 月角員 粟貳升付 四標 東南金性浩田 西金哥田 北小路 四標分明而價本段 錢文參拾捌兩準捧後 本文記 都許中并付故 不得許給而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若有同姓中 更言之弊則 以此文記憑俵[考]施行事

田主 自筆 金庸華(印)

証人 姜卯右(手決)

行

光武 9년(1905)의 干支는 乙巳이고 甲辰은 光武 8년(1904)의 간지임으로 간지를 쫓아 光武 8년으로 바로잡는다. 이 明文은 바로 이 해 正月 29일에 田主人 金庸華가 金鍾林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流來田인 月角員의 粟 2되 부치기를 錢文 38냥을 받고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都許文에 기록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076은 新文記이나 077의 입장에서는 舊文記).

(77) 光武十年 乙巳 十一月二十一日 金玉現處明文(38.5cm×27.5cm)

右明民事段 要用所致故 買得田 月角員 粟種貳升付 四標 東買者田 西梁哥田 南金哲彥田 北小路 標分明而價本段 錢文參拾肆兩準捧後 本文記并而[以] 右人處 永永放賣是遺 日後 若有更言則 此文記憑考施行事

田主 金鍾林(手決)

筆 金鍾洪(手決)

이 明文의 年代도 光武 10년(1906)의 干支는 丙午이고 乙巳는 光武 9년(1905)의 간지임으로 간지를 좇아 光武 9년으로 바로잡는다. 바로 이 해 11월 21일에 田主人 金鍾林이 金玉現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買得田인 月角員의 粟種 2되 부치기를 錢文 34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8) 隆熙一年 丁未 正月初五日 曾孫 金玉現處明文(38cm×31.5cm)

右明文事段 切有換買之意故 矣身祭條田 季岳員 皮牟陸斗付 標東金達松田 西秦仲化田 南買者父田 北金順續田 各標分明而價本段 錢文參拾五兩準捧後 右人處 本文并而 永爲放賣 日後 若有更言之弊則 以此文記憑考事

田主 高氏(右手寸, 글자는 없고 마다 표시만 했음)

筆 朴元奎(手決)

이 明文은 隆熙 원년(1907) 정월 초5일에 田主人 高氏가 金玉現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간절히 換買할 뜻이 있어서 이 몸의 祭條田²⁵⁾인 季岳員의 皮牟 6말 부치기를 錢文 35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79) 隆熙元年 丁未 九月二十一日 金光普處明文(38cm×35.5cm)

右右明文事段 己身掃祭條 正旨員 皮牟伍斗付 標東申應煥田 西小路 南朴萬芻田 北金益生田 各標分明田庫 價本段 錢文參拾伍兩準捧後 本文記并而[以] 永爲放賣爲去乎 日後 若有更言之弊則 以此文記憑考事

田主 高氏(右手寸)

筆 朴元奎(手決)

證 金行淑(手決)

이 明文은 隆熙 원년(1907) 9월 21일에 田主人 高氏가 金光普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이 몸의 掃祭條²⁶⁾인 正旨員의 皮牟 5말 부치기를 錢文 35냥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25) 祭條田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 설정한 전지를 말한다.

26) 掃祭條는 祭條와 같다.

이상의 명문으로 표기된 매매문서의 해제 내용을 <표 1>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 番 | 年 月 日 | 賣渡人 | 買受人 | 賣渡事由 | 取得源 | 所在地境 | 作物 | 面積 | 價 格 | 本文記與否 |
|----|-------------------|-----|-----|------|-----|-------|----|------|-----------|-------|
| 01 | 순조 01(1801) 09/04 | 文永上 | 金世完 | 要用所致 | 流來田 | 地趣同山員 | 粟種 | 1말6되 | 正木 1필 | - |
| 02 | 순조 11(1811) 09/21 | 李召史 | 金世完 | 要用所致 | 買得 | 可亦所岳員 | 皮牟 | 4말 | 正木 1필20척 | - |
| 03 | 순조 14(1814) 07/20 | 張漢宗 | 金世完 | 要用所致 | 流來田 | 累乙于始員 | 皮牟 | 7말 | 正木 2필35척 | - |
| 04 | 순조 14(1814) 12/18 | 金貴成 | 金世完 | 凶年 | 買得 | 久付石員 | 皮牟 | 8말 | 正木 4필 | 本文記并以 |
| 05 | 순조 21(1821) 10/08 | 金取成 | 金世完 | 要用所致 | 買得 | 介南田 | 粟 | 3되 | 正木 1필20척 | 他田并付 |
| 06 | 순조 22(1822) 10/15 | 李仁福 | 金世完 | 喪妻喪債 | 流來田 | 貴夫以員 | 皮牟 | 7말 | 正木 7필 | - |
| 07 | 순조 23(1823) 09/02 | 姜時化 | 姜時黃 | 切有用處 | 買得 | - | 皮牟 | 12말 | 農牛 1首 | 本文記并以 |
| 08 | 순조 28(1828) 01/16 | 文 松 | 金世完 | 要用所致 | 流來田 | 於膺員 | 皮牟 | 7말 | 正木 19필 | - |
| 09 | 순조 29(1829) 03/13 | 朴秀祿 | 金明祿 | - | 流來田 | 午前員 | 粟種 | 7되 | 白木 27필 | - |
| 10 | 순조 33(1833) 02/23 | 宋謙明 | 金明采 | - | 衿給田 | 大變同山員 | 皮牟 | 7말 | 正木 12필 | 本文記并以 |
| 11 | 순조 33(1833) 09/15 | 孫才仁 | 金世完 | 要用所致 | 衿給田 | 加代員 | 粟種 | 4되 | 正木 5필 | 葉作記并以 |
| 12 | 순조 33(1833) 09/15 | 文成旭 | 金明采 | 要用所致 | 祖上田 | 人主洞員 | 粟種 | 4되 | 正木 5필 | 本文記并以 |
| 13 | 순조 34(1834) 02/11 | 金先道 | 金明采 | 要用所致 | 流來田 | 無路員 | 皮牟 | 8말 | 正木 16필 | 都許文并付 |
| 14 | 순조 34(1834) 02/13 | 金明祐 | 金世完 | 要用所致 | - | 月羅花員 | 皮牟 | 6말 | 正木 7필 | - |
| 15 | 현종 03(1837) 01/28 | 金景祿 | 金世完 | 凶年 | 流來田 | 紅石員 | 粟 | 5되 | 正木 4필20척 | 都許文并付 |
| 16 | 현종 (1837) 05/23 | 任致宅 | 金光元 | 弟娶妻 | 父買得 | 靑同磊員 | 皮牟 | 3말 | 正木 4필 | 本文記并以 |
| 17 | 현종 05(1839) 11/22 | 宋萬億 | 姜召史 | 急有用處 | 買得 | 據木非來員 | 皮牟 | 5말 | 皮穀 40말 | 本文記并以 |
| 18 | 현종 06(1840) 03/13 | 金京泉 | 文卜太 | 有用處 | 流來 | 郭支里內員 | 皮牟 | 3되 | 正木 1필5척 | 都許文并付 |
| 19 | 현종 09(1843) 05/23 | 文光宗 | 金致京 | 要用所致 | 買得 | 寶用洞山員 | 皮牟 | 1되 | 白木 4필20척 | 本文記并以 |
| 20 | 현종 09(1843) 11/27 | 趙繼云 | 金百仁 | 要用所致 | 流來田 | 中路員 | 皮牟 | 23되 | 正木 13필 | 都許文并付 |
| 21 | 현종 12(1846) 04/07 | 金光元 | 金百仁 | 緊有用處 | 買得 | 南旨同山員 | 皮牟 | 3말 | 正木 15필 | 本文記并以 |
| 22 | 현종 15(1849) 01/30 | 文用得 | 金百仁 | 緊有用處 | 衿得 | 郭支里內員 | 麻子 | 2말 | 白木 58필 | 都許文并付 |
| 23 | 현종 15(1849) 02/15 | 金應弘 | 朴好 | 要用所致 | 流來田 | 大去利員 | 麻子 | 1말3되 | 白木 13필 | 都許文并付 |
| 24 | 현종 15(1849) 08/14 | 金景興 | 任召史 | 要用所致 | 衿下田 | 郭支里內員 | 皮牟 | 4되 | 正木 10필 | - |
| 25 | 철종 01(1850) 01/10 | 高世宗 | 任召史 | 要用所致 | 仲弟衿 | 上洞大巷員 | 麻子 | 7되 | 正木 23필20척 | 本文記并以 |
| 26 | 철종 02(1851) 01/22 | 安召史 | 金伯仁 | 緊有用處 | 買得田 | 爭旨乙員 | 皮牟 | 5말 | 正木 33필 | 本文記并以 |
| 27 | 철종 02(1851) 11/10 | 金光杓 | 金萬興 | 要用所致 | 流來田 | 海岸員 | 粟種 | 3되 | 正木 9필 | 都許文并 |

19세기 濟州地方의 土地賣買 實態

| 番 | 年 月 日 | 賣渡人 | 買受人 | 賣渡事由 | 取得源 | 所在地境 | 作物 | 面積 | 價 格 | 本文記與否 |
|----|-------------------|-----|-----|------|-----|-------|----|------|----------|-------|
| 28 | 철중 02(1851) 12/16 | 金成祿 | 金致京 | 要用所致 | 流來田 | 射長田員 | 皮車 | 3말 | 正木 1필10척 | 他田并付 |
| 29 | 철중 04(1853) 04/16 | 文賢興 | 金百仁 | 要用所致 | 買得 | 季岳員 | 皮車 | 8말 | 正木 1필 | 本文記并以 |
| 30 | 철중 05(1854) 01/16 | 金召史 | 金伯仁 | 行商價出 | | 郭支大巷員 | 麻子 | 2말 | 正木 20필 | 本文記并以 |
| 31 | 철중 05(1854) 02/23 | 金召史 | 任召史 | 要用所致 | 買得田 | 郭支上洞里 | 皮車 | 6되 | 正木 2필 | |
| 32 | 철중 07(1856) 01/28 | 張宗淑 | 金光根 | 要用所致 | 買得田 | 後新田員 | 皮車 | 10말 | 正木 27필 | 本文記并以 |
| 33 | 철중 09(1858) 11/14 | 金日孫 | 金應圭 | 要用所致 | 買得 | 里內家基 | 麻子 | 1말6되 | 白木26필30척 | 本文記并以 |
| 34 | 철중 10(1858) 01/02 | 金光根 | 金百仁 | 緊有用處 | 買得 | 後砂田員 | 皮車 | 10말 | 正木 37필 | 本文記2장 |
| 35 | 철중 10(1859) 02/25 | 金學俊 | 尹重煥 | 緊有用處 | 衿下 | 里內東洞員 | 麻子 | 2말 | - | - |
| - | - | - | - | - | - | 同地境 | 皮車 | 1말 | 正木 70필 | 都許文并付 |
| 36 | 철중 13(1862) 01/16 | 金銀玉 | 金知弘 | 要用所致 | 流來田 | 漢崇伊員 | 皮車 | 10말 | 正木 51필 | 都許文并付 |
| 37 | 철중 14(1863) 02/17 | 金應華 | 金知弘 | 要用所致 | 衿下田 | 新岳員 | 皮車 | 5말5되 | 正木 32필 | 都許文并付 |
| 38 | 고종 01(1864) 01/18 | 金致鼎 | 朴世得 | 要用所致 | 買得 | 漢崇伊員 | 皮車 | 1말 | 正木 25필 | 本文記并以 |
| 39 | 고종 01(1864) 02/26 | 金性兼 | 金致京 | 要用所致 | 買得 | 西洞里內員 | 皮車 | 1말3되 | 白木 12필 | 本文記并以 |
| 40 | 고종 01(1864) 04/25 | 趙仁集 | 李景祿 | 要用所致 | 買得 | 大街員 | 麻子 | 1말 | 白木 24필 | 本文記并以 |
| 41 | 고종 01(1864) 06/10 | 金明汝 | 李興祚 | 急有用處 | 買得田 | 小押介員 | 皮車 | 4말 | 白木 5필 | - |
| 42 | 고종 03(1866) 01/26 | 秦永久 | 具仁得 | 凶年 | 流來田 | 得藪鬱員 | 粟種 | 7되 | 正木 4필10척 | 都許文并付 |
| 43 | 고종 03(1866) 04/18 | 洪仁烈 | 李漢祿 | 要用所致 | 買得 | 造秀西洞 | 皮車 | 1말7되 | 白木 15필半 | 本文記1장 |
| 44 | 고종 04(1867) 03/28 | 金應圭 | 李恒祿 | 緊有用處 | 買得 | 郭支上洞員 | 麻子 | 2말 | 白木 26필 | 本文記并以 |
| 45 | 고종 05(1868) 03/24 | 朴世得 | 金明直 | 凶年 | 買得 | 漢崇伊員 | 麻子 | 1말 | 白木 13필 | 本文記并以 |
| 46 | 고종 05(1868) 06/10 | 李恒祿 | 金光普 | 緊有用處 | 買得 | 郭支上洞員 | 麻子 | 1말5되 | 白木 20필 | 本文記并以 |
| 47 | 고종 06(1869) 11/14 | 李召史 | 金知洪 | 還穀逋欠 | 買得 | 汗崇伊員 | 麻子 | 1말 | 白木 3필10척 | 本文記并以 |
| 48 | 고종 06(1869) 11/17 | 金知洪 | 任召史 | 要用所致 | 買得 | 漢崇伊員 | 麻子 | 1말 | 正木 3필30척 | 本文記并以 |
| 49 | 고종 06(1869) 12/17 | 任召史 | 金知洪 | 要用所致 | 買得 | 上洞里內員 | 麻子 | 5되 | 正木 1필 | 本文記并以 |
| 50 | 고종 06(1869) 12/24 | 高興祿 | 姜召史 | 凶年 | - | 清水里內員 | 皮車 | 2말5되 | 穀食 22말 | - |
| 51 | 고종 06(1869) 12/25 | 文丁喆 | 金知洪 | 急有用處 | 流來田 | 兵川田員 | 皮車 | 5말 | 正木 6필 | 都許文并付 |
| 52 | 고종 07(1870) 01/20 | 高召史 | 金知洪 | 凶年 | 買得田 | 得藪乙員 | 粟 | 7되 | 무명 30척 | 本文記并以 |
| 53 | 고종 07(1870) 01/25 | 高明世 | 姜召史 | 凶年 | 買得田 | 當非內員 | 粟種 | 3되 | 白木 30척 | 相換記并以 |
| 54 | 고종 07(1870) 03/01 | 李進成 | 姜召史 | 貸用 | 買得田 | 金戎將水員 | 皮車 | 7말 | 무명 3필값 | 都許文并付 |
| 55 | 고종 07(1870) 08/12 | 朴宗榮 | 高明元 | 要用所致 | 流來田 | 造清員 | 皮車 | 17말 | 正木 20필 | 都許文并付 |
| 56 | 고종 08(1871) 01/18 | 李明哲 | 康召史 | 急有用處 | 買得田 | 道木骨員 | 皮車 | 5말 | 白木 3필 | 他田并付 |
| 57 | 고종 08(1871) 04/11 | 李景祿 | 金知洪 | 要用所致 | 買得田 | 大巷員 | 皮車 | 1말 | 正木 7필 | 本文記并以 |
| 58 | 고종 08(1871) 04/11 | 任召史 | 金達才 | 要用所致 | 買得田 | 大巷員 | 皮車 | 1말 | 正木 6필 | 本文記并以 |
| 59 | 고종 08(1871) 04/11 | 任召史 | 金達才 | 要用所致 | - | 汗崇伊員 | 皮車 | 1말 | 正木 5필 | 本文記并以 |
| 60 | 고종 08(1871) 05/12 | 孫召史 | 白尙龍 | 父母喪債 | 衿得田 | 郭支上洞 | 皮車 | 1말 | 錢文 28냥 | 本文記并以 |
| 61 | 고종 08(1871) 06/27 | 玄啓恩 | 康召史 | 要用所致 | 買得 | 猪歌屹員 | 皮車 | 1말5되 | 白木 3필10척 | 他田并付 |
| 62 | 고종 09(1872) 01/12 | 李武兼 | 金明隱 | 白木代用 | 買得 | 文勳乙員 | 粟種 | 1되 | 白木 1필25척 | 本文記并以 |
| 63 | 고종 09(1872) 06/06 | 白尙龍 | 金光允 | 要用所致 | 買得 | 郭支上洞員 | 皮車 | 1말 | 錢文 36냥 | 本文記并以 |
| 64 | 고종 09(1872) 11/09 | 金大鎰 | 姜召史 | 要用所致 | 買得 | 文巾員 | 粟種 | 1되 | 白木1필錢34냥 | 本文記并以 |
| 65 | 고종 10(1873) 07/19 | 尹重煥 | 金知洪 | 要用所致 | 買得 | 上洞里內員 | 車種 | 3말 | 白木 38필 | 本文記并以 |

| 番 | 年 月 日 | 賣渡人 | 買受人 | 賣渡事由 | 取得源 | 所在地境 | 作物 | 面積 | 價 格 | 本文記與否 |
|----|-------------------|-----|-----|------|-----|-------|----|------|---------|-------|
| 66 | 고종 13(1876) 02/04 | 달 락 | 左貴得 | 要用所致 | 買得 | 好田員 | 皮牟 | 6말 | 錢文 7냥 | 本文記并以 |
| 67 | 고종 14(1877) 11/23 | 李日孫 | 金知洪 | 緊有用處 | 買得 | 小押介員 | 皮牟 | 3말 | 白木 2필半 | 本文記并以 |
| 68 | 고종 15(1878) 02/26 | 高明元 | 金知洪 | 要用所致 | 買得田 | 新岳員 | 皮牟 | 17말 | 正木 103필 | 本文記并以 |
| 69 | 고종 21(1884) 02/04 | 高 氏 | 金知洪 | 得病 | 買得 | 城路長者田 | 皮牟 | 3말 | 錢文 46냥 | 本文記并以 |
| 70 | 고종 21(1884) 02/05 | 金明汝 | 金光普 | 要用所致 | 買得田 | 新岳員 | 皮牟 | 18말 | 錢文 62냥 | 本文記并以 |
| 71 | 고종 21(1873) 03/01 | 金辛吉 | 金性浩 | 山債條 | - | 海巖味員 | 粟 | 3되 | 錢文 26냥 | 本文記并以 |
| 72 | 고종 26(1889) 10/02 | 金召史 | 文啓能 | 病席艱難 | 流來 | 家基 | 皮牟 | 1말 | 錢文 25냥 | 都許文并付 |
| 73 | 고종 26(1889) 11/11 | 文啓云 | 金光賣 | 要用所致 | 買得 | 上洞里 | 麻子 | 1말2되 | 錢文 30냥 | - |
| 74 | 光武 01(1897) 04/04 | 李景龍 | 金性浩 | 要用所致 | 買得 | 赤右員 | 粟種 | 3되 | 錢文 22냥 | 本文記并以 |
| 75 | 光武 01(1897) 05/18 | 李元吉 | 金知洪 | 急有用處 | 流來田 | 季岳員 | 皮牟 | 7말 | 錢文 35냥 | 都許文并付 |
| 76 | 光武 08(1904) 01/29 | 金膺華 | 金鍾林 | 要用所致 | 流來田 | 月角員 | 粟 | 2되 | 錢文 38냥 | 都許文并付 |
| 77 | 光武 09(1905) 11/21 | 金鍾林 | 金玉現 | 要用所致 | 買得田 | 月角員 | 粟種 | 2되 | 錢文 34냥 | 本文記并以 |
| 78 | 隆熙 01(1907) 01/05 | 高 氏 | 金玉現 | 換買 | 祭條田 | 季岳員 | 皮牟 | 6말 | 錢文 35냥 | 本文記并以 |
| 79 | 隆熙 01(1907) 09/21 | 高 氏 | 金光普 | - | 掃祭條 | 正旨員 | 皮牟 | 5말 | 錢文 35냥 | 本文記并以 |

〈표 1〉에 의하면, 토지를 매도하게 된 사유로 전체 79건 80필지 중에서 要用所致로 표기된 문서가 43건, 緊有用處(8건, 急有用處 5건, 切有用處 1건, 有用處 1건 포함)가 15건 등 문서의 절대다수가 緩急의 차이는 있겠으나 막연히 오긴하게 사용할 데가 있어서 받을 판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흉년으로 인한 것이 7건, 喪葬의 부채가 2건, 빌려 쓴 돈을 갚기 위한 것이 2건, 동생을 장가보내기 위한 것이 1건, 사사로이 소모한 還穀을 갚기 위한 것이 1건, 산소의 부채가 1건, 病으로 인한 것이 1건, 가난해서가 1건, 받을 바꾸어서 사기 위한 것이 1건, 行商을 하기 위해 빚을 낸 것이 1건, 미상이 3건(합계 79건)이다.

토지의 취득 경위는 매수한 밭이 44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밭이 20건, 유산의 몫으로 받은 밭이 7건, 조상의 제사를 받들기 위한 것이 2건, 미상 7건(합계 80필지)이다. 재배되는 농작물은 皮牟[겉보리]가 50필지, 粟種[좁쌀] 16필지, 麻子[삼씨] 14필지(총 80필지)이며, 교환물로 이용된 물건은 正木이 41건, 白木이 22건, 錢文 14건, 農牛 1건, 穀食 1건, 미상 1건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밭 면적을 계산해 보면, 밭 하나가 평균 3.35375마지기 3마지기 남짓 되며, 그 평수는 503.0625로 평균 500여 평이었다. 錢文으로 환산해 보면 1마지기의 값이 평균 9.94냥이다.

2. 不忘記, 可據(考)文 등으로 표기된 賣買文書

不忘記란 本文記(舊文記)가 없는 토지를 賣渡하는 경우에, 賣渡人이 그 본문기가 없는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이를 작성하고 新文記를 첨부하여 買受人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독립된 문서라고 할 수는 없으나 新文記를 분실하는 경우에 이 불망기에 의해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²⁷⁾ 不忘記도 手記와 같은 효용의 문서로, 거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거래행위를 보증하거나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사실을 다짐할 때에 작성하여 교부되었다고 한다. 특히 不忘記는 일방이 타방에 대한 이행의 약속에 한하지 않고 다수인이 서로 특정작위, 부작위를 서약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역시 후일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점에서 手記·手標와 같다고 한다.²⁸⁾

따라서 여기서는 手記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 같다. 즉, 手記는 手標와 함께 賃借·寄託·賣買·약속 등을 할 때 주고받는 證書로서 倭音[다짐]의 성격을 갖으며, 手標·手記와 혼용되었다.²⁹⁾ 불망기와 수기·수표는 잊지 않기 위하여 적어 두는 글발인 데 비하여 可據文, 可考文 등은 뒤에 근거(참고)로 삼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80) 咸豐十年 庚申 四月二十四日 高召吏(處)不忘記(36cm×32cm)

右右不忘記事段 要用所致 勢不得(已) 好田員 金明哲處買得田 皮牟參斗付只田四標段 東南小路 西北趙賣者田 各四標分明(爲)遺 田庫價本段 土木貳疋半 準計捧上後 同高召吏處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 永爲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事

田主 趙漢京(手決)

筆執 姜任□(手決)

이 不忘記는 철종 11년(1860) 4월 24일에 田主人 趙漢京이 高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好田員에 있는 金明哲에게 買得한 皮牟 3말 부치기를 土木 2필 반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발이 동일 문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7) 和田一郎, 1967, 『朝鮮土地稅制度調查報告書』(覆刻版) 宗高書房 225쪽.

28) 박병호, 1999, 「去來와 訴訟의 文書生活」 『호남지방 고문서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59쪽.

29) 崔承熙, 1989, 『韓國古文書研究』 知識産業社, 458쪽.

(81) 同治五年 丙寅 十二月初四日 金致京處不忘記(39.5cm×29cm)

右不忘記事段 要用所致故 勢不得而[已] 在於周斤水員 皮牟四斗付只田庫 四標段 東北宋仁弘田 南梁京烈田 西小路 各四標分明爲遺 田庫價本段 白木壹疋貳尺 準計 捧上後 同致京處 本文記段 他田并付故 不得許給 永爲賣放爲去乎 日後 同生孫中 相爭之弊是去等 持此不忘記告官下呈[正]事

田主 姜應祿(手決)

筆執 金明元(手決)

이不忘記는 고종 3년(1866) 12월 초4일에 田主人 姜應祿이 金致京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하는 수 없이 周斤水員에 있는 皮牟 4말 부치기를 白木 1필 2척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본문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82) 同治七年 戊辰 十二月二十五日 姜召吏處不忘記(27cm×21.5cm)

右不忘記事段 渭然用處故 勢不得只[已] 在於光參員 皮牟五斗付只 田庫四標段 東南任元夢田 西文用信田 北金明銀田 各標分明爲故 田庫價本段 白木貳疋準捧後 右人處 本不忘記段 他田并付故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更言之弊是去等 此不忘記告官下正事

田主 自筆執 宋京勛(手決)

이不忘記는 고종 5년(1868) 12월 25일에 田主人 宋京勛이 姜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하는 수 없이 光參員에 있는 皮牟 5말 부치기를 白木 2필을 받고 영원히 팔아버리되, 불망기는 다른 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83) 光緒二年 丙子 二月十四日 姜召吏處不忘記(38cm×29.5cm)

右不忘記事段 緊有用處故 勢迫不得已 父主買得田 非來骨員 皮牟壹斗伍刀付 標 東買者田 西金永基田 南金明祿田 北賣者田 各四標分明而田庫 價本段 白木二十尺 準計捧上後 同人處 本文記并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若有爭人之弊[弊]是 去等 持此不忘記告官下呈[正]事

田主 李武烈(手決)

筆執 文用辰(手決)

이 不忘記는 고종 13년(1876) 2월 14일에 田主人 李武烈이 姜召史得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요긴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아버님이 산 非來骨員의 皮車 1말 5되 부치기를 白木 20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84) 光緒二年 二月二十四日 姜召史處不忘記(41.5cm×29.5cm)

右不忘記事段 當此荒年 出處無路故 在於吾矣買得田 好田員 參合 皮車陸斗付只 田庫 肆標段 東小路 西趙永進田 南金鶴田 北金大旭田 各四標分明爲遣 田庫價本段 白木貳疋拾尺 準計捧上後 右人處 本文記并 永爲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相爭之弊 是去等 持此不忘記告官下呈[正]事

田主 姜信好(手決)

筆 文光旭(手決)

이 不忘記는 고종 13년(1876) 2월 24일에 田主人 姜信好가 姜召史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흉년을 당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으므로 나의 買得田인 好田員에 있는 3필지 합계 皮車 6말 부치기를 白木 2필 10척을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85) 光緒九年 癸未 十二月初六日 四寸 金知洪處不忘記(39.5cm×21cm)

右不忘記段 要用所致 麻場知弓疋員 粟種肆升付只 肆標段 東梁哥田 西梁哥田 南北小路 各標爲在田庫 價本段 定木一疋·錢文貳兩準捧後 右人處 永爲放賣爲去乎 後若有雜談之弊則 以此不忘記憑考事

田主 姜應彬(手決)

筆執 姜應奎(手決)

이 不忘記는 고종 20년(1883) 12월 초6일에 田主人 姜應彬이 四寸 金知洪에게 작성해 준 문서로서, 要用所致로 麻場知弓疋員의 粟種 4되 부치기의 값을 무명 1필, 錢文 2냥으로 정하여 받고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내용이다.

(86) 光緒十二年 丙戌 二月初八日 金達順處 相換不忘記(35cm×21.5cm)

右相換不忘記段 彼此以扶[附]近處 買得田 東地方芑員 粟種三升付只 標東名不知姜哥田 西買者田 南姜己摠田 北名不知梁哥田 標分明 而右人之田 甘南木而員 粟三升付只 標東姜哥田 西金哥田 南賣者田 北金致仁田 標分明而添價錢一兩準捧後 永爲相換是矣 日後 若有更言之弊則 以此不忘記憑考事

田主 梁濟烈(手決)

筆 朴元奎(手決)

이 不忘記는 高宗 23년(1886) 2월 초8일에 田主人 梁濟烈이 金達順에게 토지를 相換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彼此 가까운 곳에 있는 밭을 원하므로 買得田인 東地方芑員의 粟種 3되 부치기를, 甘南木而員에 있는 右人の 粟 3되 부치기와 錢文 1냥을 더 받은 뒤 영원히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87) 同治七年 戊辰 三月初十日 妻姜召史處可據文(50cm×30cm)

右可據文事段 嗚呼 吾以貧窮之致 未爲娶妻作記 右人治産三十餘年 而當今夫婦年老則 婦有從子之意 故同居買得 與妻便持來之物 依所願拮据爲去乎 日後吾族屬及儀子中 相左之弊是去等 以此可據文憑考事

可據主 金致京(手決)

筆 執 趙思溫(手決)

後

一 月伸夜員 金之弘處買得田 粟三升付 標東趙永萬 山伊員 李光集處買得田 二合 粟三升付 標東趙宗五田 同員 洪宅朱處買得田 粟二升付 標東小路 長田員 宋宗禮處買得田 參合 牟二十斗付 標南小路 西洞里內員 李安文處買得田 牟一斗付 標東小路 同員 文光集處買得田 牟一斗五升付 標東文武烈田 同員 金性兼處買得田 牟一斗五升付 標北小路 可希夜味員 金之弘處買得田 牟三斗付 標東宋京宗田 同員 金之弘處買得田 牟二斗付 標東姜士兼田 江月員 金明原處買得田 二合 粟三升付 標東小路 鼠郡永員 康應泉處買得田 四斗付 標東宋仁興田 射場田員 金成泉處買得田 粟一升付 標東金明泉田 工匠田員 父主前買得田 粟一升付 標東金明元田 西泉味員 姜時俊處買得田 牟四斗付 標西姜順得田印

이 可據文은 高宗 5년(1868) 3월 초10일에 可據主人 金致京이 妻 姜召史에게 작

성해 준 문서이다. 내가 빈궁한 소치로 아내를 맞아들여 世系文籍을 작성하지 못한 채 婦人과 재산을 불린 지 30여 년에 지금 夫婦가 연로해 진 즉, 부인은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 줄) 뜻이 있으므로 동거하며 買得한 것과 처가에서 가져온 재물을 소원대로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그 내역을 <표 2>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 地 境 | 取 得 經 緯 | 作 物 | 面 積 | 四 標 | 備 考 |
|---------|-----------|-----|-------|--------|---|
| 月伸夜員 | 金之弘處 買得田 | 粟 | 3되 | 東 趙永萬 | 18필지 38말 3되 부치기(車 9필지 33말 부치기, 粟 8 필지 1말 3되 부치 기, 미상 1필지 4 말 부치기)전부 買 得田이다. |
| 伊員(2곳) | 李光集處 買得田 | 粟 | 3되 | 東 趙宗五田 | |
| 同員 | 洪宅朱處 買得田 | 粟 | 2되 | 東 小路 | |
| 長田員(3곳) | 宋宗禮處 買得田 | 車 | 20말 | 南 小路 | |
| 西洞里內員 | 李安文處 買得田 | 車 | 1말 | 東 小路 | |
| 同員 | 文光集處 買得田 | 車 | 1말 5되 | 東 文武烈田 | |
| 同員 | 金性兼處 買得田 | 車 | 1말5되 | 北 小路 | |
| 可希夜味員 | 金之弘處 買得田 | 車 | 3말 | 東 宋京宗田 | |
| 同員 | 金之弘處 買得田 | 車 | 2말 | 東 姜士兼田 | |
| 江月員(2곳) | 金明原處 買得田 | 粟 | 3되 | 東 小路 | |
| 鼠郡永員 | 康應象處 買得田 | ? | 4말 | 東 宋仁興田 | |
| 射場田員 | 金成象處 買得田 | 粟 | 1되 | 東 金明象田 | |
| 工匠田員 | 父 主 前 買得田 | 粟 | 1되 | 東 金明元田 | |
| 西泉味員 | 姜時俊處 買得田 | 車 | 4말 | 西 姜順得田 | |

(88) 癸酉 閏六月拾九日 矣子 金智弘處可考文(35.5cm×25.5cm)

右文爲可據文事段 惟我夫婦間 如于買得田土 分半拮据 而本文記與授之境 西泉味里內員 姜時準處買得田 皮車四斗付田 本文記闕失故 日後後考次 茲以可據文出給爲去乎 後若有本文記提示者是去等 以此可據[考]文 憑考施行事

可據[據]文主 金致景(手決)

筆執 金履良(手決)

이 可考文은 고종 10년(1873) 윤6월 19일에 可考文主人 金致景이 金智弘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오직 우리 夫婦 사이에 약간의 買得한 田土를 分半하여 넘겨주고 本文記를 주고받을 때, 西泉味 里內員에 있는 姜時準에게 산 皮車 4말 부치기는 本文記를 분실하였으므로 뒷날 참고하기 위해 이 可考文을 出給하므로 이 뒤에

만일 본문기를 제시하는 자가 있거든 이 可考文을 가지고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분실한 본문기 대신에 뒤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可考文을 작성해 준 것이다.

Ⅲ. 分財記

衿記[깃기]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遺産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록하지 않고 자녀들마다 그 몫[衿]을 따로 작성해 주는 문서이다. 葉作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衿給文記는 부모 생시, 혹은 遺言에 의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分給] 문서이다. 그리고 都許文은 자녀들에게 분급한 내용을 동일 문서에 함께 적어놓은 것을 말한다.

1. 葉作記

(89) 道光拾參年 癸巳 參月初壹日 末女處葉作記(18cm×32.5cm)

右葉作記事段 加代田員南邊 粟種肆升付割給 標南金在旭田 半缸壹介 許迫壹介 區處施行事

元財主 父姜(手決)

筆執 張鵬朝(手決)

이 葉作記는 순조 33년(1833) 3월 초1일에 원래의 財主인 아버지 姜氏가 막내딸에게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물려주는 재산의 내역은 加代田員 南邊의 粟種 4되 부치기를 떼어 주는 외에 반 항아리[半缸]와 허벅[許迫] 각각 1개이다.

그러나 이 葉作記는 財主가 姜氏로 되어 있어 金氏宅과는 관계가 없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문서가 김씨택에 소장된 동기는 末女の 남편인 孫才仁이 내용 중의 加代田員을 金世完에게 매도할 때, 이 엽작기를 舊文記 대신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문서번호 11 참조).

(90) 光緒二年 丙子 正月初七日 次女處葉作記(27cm×28.5cm)

流來田 廣田員 皮牟伍斗付 標東高大靜田
 元財主 父金(手決)
 門長 金(手決)
 筆 五寸侄 知洪(手決)

이 葉作記는 고종 12년(1875) 정월 초7일에 원래의 財主人 아버지 金氏가 次女에게 작성해 준 財産分給文書이다. 流來田 즉,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廣田員의 皮牟 5말 부치기를 물려주고 있다.

2. 衿記와 衿給文記

(91) 道光拾六(年) 丙申 十二月二十五日 長孫處衿記(49.5cm×33cm)

本里上洞員 祖上流來田家基 麻子二斗付 標(東)朴圭明田 草家三間一鞭併衿給 高曾祖祭條成致[置]是遣 又本里 前旨員家基 皮牟壹斗伍刀付 標東金光源家基 若小添加承旨員 皮牟陸斗付 標東宋正保 衿給父母輪祭成致[置]是遣 累乙于始員 皮牟玖斗付 標東秦時永田 貴夫以員 皮牟捌斗付 標東金致星 於膺員二庫合 捌斗付 標東李廷卜 夫面境 加坐田員 粟種四升伍合付 標北孫子百仁田 農牛一首鼎子俱盖壹部 已上合木捌十貳疋印

元財主 祖父 金(手決)
 門長 長兄 金(手決)
 筆執 姪子 金明祐(手決)

이 衿記는 현종 2년(1836) 12월 25일에 원래의 財主人 祖父 金氏가 長孫에게 재산의 몫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여기서 지금되는 내역은 高·曾祖의 祭條와 父母의 輪祭條, 당사자에게 배당된 토지에 農牛 한 마리와 鼎子俱盖 1부 등 무명으로 환산하면 합계 82필이다. 부모의 輪祭條란 이미 사망한 부모의 제사를 돌아가며 하라는 뜻이다. 分財 내역을 <표 3>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區 分 | 地 境 | 取得經緯 | 作 物 | 面 積 | 其 他 |
|------------------------------|---|-------|---------------------------------------|--|---|
| 高·曾祖祭條 父母 輪祭條 長孫 景 | 上洞員 家基 前旨員 家基 加承旨員 累乙于始員 貴夫以員 於膺員(2곳) 夫面 加坐田員 | 祖上流來田 | 麻子 皮牟 皮牟 皮牟 皮牟 ? 粟種 | 2말 1말5되 6말 9말 8말 8말 4되5홉 | 草家 3間 1鞭 農牛 1首 鼎子俱盖 1部 |

(92) 辛未 二月十七日 長妹處 衿給文記(33.5cm×38cm)

右明文事段 父母生時 從流[遺]言 郭支上洞洞內員 草家三間壹便 鞭 家基 皮牟壹斗付并 四標 東小路 西李順伊家基 南白書方田 北小路 四標分明 而矣長妹 永永許給之意 如是憑考事

門長 三寸(手決)

男孫 滿斗(喪背着)

筆執 尹宗興(手決)

이 衿給文記는 고종 8년(1871) 2월 17일에 長妹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財主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부모 생시에 남긴 유언에 따라 郭支上洞洞內員에 있는 草家 3칸 한 채의 집터인 皮牟 1말 부치기를 영원히 許給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長妹의 오빠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집안 어른[門長]인 三寸과 南孫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증인으로 입회했던 것 같다.

(93) 同治十四年 乙亥 二月初一日 長女處衿記(19.5cm×42.5cm)

買得田 郭支爭旨員 皮牟伍斗付 標西小路 買得 兵門田員 皮牟伍斗付 標東北小路 岳季員 皮牟壹斗伍升付 標南李興祚田

右還收田代遮歸川員 皮牟一石付 標東崔彌鳳田

元財主 自筆 金(手決)

不得已 此一庫田 還收後 吾后室高召史 掃祭條成置次 矣長子衿下 四間草家外鞭 燒火是遺 仲子衿下 牟四斗付田 乃爲辛吉者之所奪也 則此皆各一庫式 還收之狀 以此可知 而永無雜談事

이 衿給文記는 고종 12년(1875) 2월 초1일에 원래의 財主人 金氏가 자필로 長女에게 작성해 준 分財文書이다. 그 내역은 원래 郭支爭旨員의 買得田 皮牟 5말 부치기, 兵門田員의 買得田 皮牟 5말 부치기, 岳季員의 皮牟 1말 5되 부치기 등 3필지(합계 皮牟 11말 5되 부치기)였는데, 이를 還收하고 그 대신에 遮歸川員의 皮牟 1섬 부치기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遮歸川員 1필지는 뒤에 后室 高召史의 掃祭條로 만들어두려 하였으나 長子의 몫으로 준 4칸 草家の 바깥채가 불탔고, 仲子의 몫으로 준 牟 4말 부치기 받은 金辛吉에게 빼앗겼으므로, 이들 모두에게 각각 1필지씩 還收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영원히 雜談하지 말라 하였다.

3. 都許文

(94) 大正十年 辛酉 十二月初八日 都許文(80cm×30,5cm)

右文事段 大抵 人之有子孫者 乃爲先世之本也 若順從則可也 不然則何爲人乎 今世之人 不知先世與父兄弟之重 而但知財重 不顧道理 此必衰世之運矣 故吾心之所以惻然也 惟我之如于流來與買得田土 旣爲區處於子女處 然今所存未分田 改以再來區處之意 今以遺願是旂 又依如前區處 而成都許文後 若有相左之弊則 以此文憑考事

長子性浩處

流來田 押洞山員 二合 皮牟八斗付 標東李時花田 流來家基 上洞員外門路并 麻子貳斗及草家三間壹鞭 標北秦聖勛田 流來田 吾其旨員 皮牟五斗付 標東金哥田 流來田 馬方石員 皮牟六斗付 標東小路 外馬方石員 皮牟三斗付 標東南小路 流來田 仁主洞員 粟三升付 標西南梁哥田 祖上田 海岩伊員 粟三升付 標東西小路 青草田 得藪乙員 粟五升付 標東秦大元田 買得田 大街員 皮牟一斗三升付 標西小路 流來畚造水巨旭伊員 畚種一斗五升付內半八升付 標東李哥畚 流來田 早清泉味員 皮牟一石付內半七斗五升付 標南李東贊田(印)

次子性武處

流來田 無樓員三合 皮牟八斗付 標東金眞旭田 流來田 新岳員 皮牟六斗付 標東金行杓田 流來田 上洞里內員 皮牟三斗付 標東姜時範田及小路 外家基 麻子五升付三間一鞭 標西金升允家坐 流來田 當洞員 皮牟三斗付 標西小路 流來青草田 不近芻員 粟種四升付 標北小路 流來畚 造水巨旭伊員 畚種八升付 標西文哥田 流來田 早清泉味員 皮牟七斗五升付 標北高彥石田(印)

長女處

買得田 貴夫利員 皮牟五斗付 標東金寶化田 買得田 山乃田員 皮牟三斗付 標北秦
松田(印)
元財主 金(印)

이 都許文은 1921년 12월 초8일에 원래의 財主인 金氏가 子女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分財文書이다. 먼저 財主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다.

“대체로 사람에게 자손이 있는 것은 곧 先世를 위하는 근본이다. 만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좋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先世와 父, 兄弟의 重함을 알지 못하고 단지 재산의 중요함만을 알아서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는 반드시 쇠망해 가는 세상의 운명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측은하게 생각하는 所以이다. 다만 나의 약간의 유래전과 매득전은 이미 자녀들에게 구분하여 처리하였으나 지금 남아 있는 未分田을 다시 구분하여 처리할 뜻으로 이제 소원을 남기며, 또 전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고 都許文을 작성한 뒤 만일 서로 반목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도허문으로 빙고하라.”

분재의 내역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 區分 | 取得經緯 | 地境 | 作物 | 面積 | 四標 | 備考 |
|----------|------|--------|------|------|--------|--------------------|
| 長子 性浩 | 流來田 | 押洞山員 | 皮牟 | 8斗 | 東 李時花田 | (2곳 합계) 草家 3間1鞭 |
| | 流來家基 | 上洞員外門路 | 麻子 | 2斗 | 北 秦聖勛田 | |
| | 流來田 | 吾其旨員 | 皮牟 | 5斗 | 東 金哥田 | |
| | 流來田 | 馬方石員 | 皮牟 | 6斗 | 東 小路 | |
| | 流來田 | 外馬方石員 | 皮牟 | 3斗 | 東 南小路 | 青草田 |
| | 流來田 | 仁圭洞員 | 粟 | 3升 | 西南 梁哥田 | |
| | 祖上田 | 海岩伊員 | 粟 | 3升 | 東西 小路 | |
| | ? | 得藪乙員 | 粟 | 5升 | 東 秦大元 | |
| 買得田 | 大街員 | 皮牟 | 1斗3升 | 西 小路 | | |

| 區分 | 取得經緯 | 地境 | 作物 | 面積 | 四標 | 備考 |
|----------|--|---|--|--|---|-------------------------------------|
| | 流來畚 流來田 | 造水巨旭伊員 早清泉味員 | 畚種 皮牟 | 8升 7斗5升 | 東 李哥畚 南 李東贊田 | |
| 次子 性武 | 流來田 流來田 流來田 外家基 流來田 流來田 流來畚 流來田 | 無樓員 新岳員 上洞里內員 當洞員 不近芑員 造水巨旭伊員 早清泉味員 | 皮牟 皮牟 皮牟 麻子 皮牟 粟種 畚種 皮牟 | 8斗 6斗 3斗 5升 3斗 4升 8升 7斗5升 | 東 金眞旭田 東 金行杓田 東 姜時範田 西 金升允家 西 小路 北 小路 西 文哥田 北 高彥石田 | (3곳 합계) (草家)3間 1鞭 青草田 |
| 長女 | 買得田 買得田 | 貴夫利員 山乃田員 | 皮牟 皮牟 | 5斗 斗 | 東 金寶化田 北 秦松田 | |

〈표 4〉의 分財 대상은 장자와 차자, 장녀 3명이며, 총 면적은 24필지 71말 9되 부치기이다. 이들 토지의 취득 경위는 조상유래전 18필지, 매득전 3필지, 기타 3필지로 되어 있다. 우선 長子에게는 12필지에 34말 7되 부치기(皮牟 7필지 30말 8되 부치기, 粟種 3필지 1말 1되 부치기, 畚種 1필지 8되 부치기, 麻子 1필지 2말 부치기)가 지급되었고, 次子에게는 10필지에 29말 2되 부치기(피모 7필지 27말 5되 부치기, 속종 1필지 4되 부치기, 답종 1필지 8되 부치기, 마자 1필지 5되 부치기), 그리고 長女에게는 피모 2필지에 8말 부치기가 지급되었다. 형제간의 차이는 2필지에 5말 5되로 장자가 더 많다. 또 형제에게는 草家 3칸 한 채가 각각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느 분재기에서 볼 수 있는 祭條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IV 맺음말

- 문서 양식의 추이 -

이상에서 19세기에 애월읍 광지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토지매매문서와 분재기를 살펴보았다. 우선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은 매매문서가 明文, 不忘記, 可據文, 可考文 등으로, 분재기가 葉作記, 衿記, 衿付文書, 都許文 등으로 다양하다는 것이며, 개중에는 빚을 받기 위해 官에 소송을 제기한 문서가 있었는가 하면(문서번호 30), 마을의 里任으로 있으면서 사사로이 還穀을 소모하였다가 이를

값기 위해 받을 파는 경우가 있었다(문서번호 47). 또 還退 즉, 도로 물릴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문서의 말미에 附記한 문서도 있었다(문서번호 67).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賣渡人이 還退를 약속하고 이를 문서의 말미에 附記하는 예는 오래 전부터 행해진 관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를 매도인이 도로 물리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한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그 기한 내에 혹은 기한이 만료될 때, 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때라도 原價를 반환하고 문서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란 매도인이 그 토지를 물릴 수 있는 금전상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기한이 지나도 매도인이 도로 물리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원히 소유하여 경작한다는 등의 약속 내용을 附記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이 글에서 다루어진 문서는 대부분 證人(訂人) 없이 買受人을 포함하여 財主(田主)와 筆執만으로 작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단지 재주만으로 작성된 것도 있다. 원래 문서는 買受人과 토지를 賣渡하는 財主, 입회인으로서의 證人, 문서 작성자인 筆執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지고, 또 재주와 증인·필집 등은 문서의 말미에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手決 혹은 手寸·手掌)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다. 즉, 토지 매매문서의 양식은 『儒胥必知』에 수록된 문서의 양식이 전국적으로 통용되었으며, 제주지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로 넘어가면서 法紀가 해이해짐에 따라 증인과 필집의 連署에 관한 규정은 空文化되고, 그에 따라 문서는 매매 당사자들의 임의대로 작성되었다. 이렇듯 문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작성하여도 官으로부터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더욱이 증인과 필집은 문서 작성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었으므로 형식상 連署를 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리하여 증인과 필집의 연서가 있는지의 여부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고 또 문서 성립상의 요건이 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증인 없이도 문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철종대에 와서 제주지방에서는 『壬午新定通式』이 적용됨으로써 매매 당사자들은 마을의 警民長이나 農監을 首保 혹은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田地賣買條에 의하면, 토지 매매문서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민장이나 농감의 서명뿐 만 아니라 洞號標[마을 印], 永字方標 등의 날인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전지의 매매는 가격을 결정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 먼저 전주는 사는 동네의 경민장을 首保로 세우고 다음으로 당해 마을의 농감을 증인으로 세워서 문서 말미

에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먼저 本洞의 號標를 날인하고 다음으로 永字方標를 날인하여 문서를 만든다[영원히 팔아버리면서 만든 문서는 30일이 지나면 還退를 허락하지 않는다].”

더욱이 고종 30년대부터는 새로운 증명용지를 만들어 여기에 수수료를 첨부하여 증명을 신청하면 所在官이 이를 증명하게 되었다. 증명용지는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근세로 오면서 토지에 대한 관념이 전차 발달함에 따라 光武 10년(1906) 10월에 이르러서는 전문 10조(부칙 2조 포함)로 된 勅令 제65호의 ‘土地家屋證明規則’이 공포되고 같은 해 11월에는 法部令 제4호로 전문 16조의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이 공포되었다. 즉, 토지나 가옥을 매매하거나 贈與·交換 혹은 典當 하였을 때, 그 계약서에 統首 혹은 洞長의 認證을 거친 뒤 郡守 혹은 府尹의 증명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증명을 받은 계약서는 완전한 증거가 되었다. 또 그 시행 세칙에서는 통수 혹은 동장, 군수 혹은 부윤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었다.